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광복 50주년 기념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5. 8. 11.

民族統一研究院

- 目 次 -

開 會 辭	李秉龍 ... 1
I. 主題發表	3
1.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방향	朴英鎬 ... 5
2.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朴淳成 ... 53
II. 綜合討論	133
<附錄> 會議日程	153

開 會 辭

잘 아시다시피 光復 50周年을 맞이하는 올해는 남북관계 및 민족통일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재점검하고 國民的 次元에서 통일을 준비해 나가는 적절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같은 상황에서 오늘 여러분들을 모시고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이라는 주제로 學術會議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며, 바쁘신 와중에도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학자, 전문가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公私多忙하신 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내빈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드립니다.

북한은 현재 김정일체제의 불확실성, 경제난의 심화, 그리고 국제적 고립 등 三重苦에 따른 난국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난국의 타개와 체제존속을 위해 북한은 제한적인 경제개방정책을 추진하면서 미·일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남관계에서는 여전히 통일전선전술을 추진하면서 혁명역량 약화에 따라 남북공존을 모색하는 이중적 전략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최근 쌀 제공과정에서 나타난 북한의 행위는 우리의 순수한 의도조차도 전략적 차원에서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하겠습니다.

북한은 앞으로도 큰 상황의 변화가 없는 한, 기존의 대남전략 테두리 내에서 남북관계를 운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경수로문제에서 「한국형」과 「한국의 중심적 역할」을 간접적으로 인정하고, 한국이 제공하는 쌀을 수용한 사실 자체는 남북 화해·협력이 북한의 活路 개척에 도움을 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라 하

겠습니다.

이제 남북관계는 소모적인 경쟁과 정치적 대결을 지양하고, 나아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民族의 福利增進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방향, 즉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민족공동체 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합의의 도출과 이를 구현할 수 있는 實踐的 方案의 모색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바로 이러한 실천방안의 구상이며, 이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을 구체적인 實踐事業을 통해 추진함으로써 보다 가시적으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정부와 국민이 수행해야 할 目標과 役割을 설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안은 현재와 같은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남북간의 異質化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학술회의가 우리의 對北 및 統一政策 입안에 도움이 되고 구체적인 실천방안 마련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討論의 場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사계의 전문가 여러분께서 자유롭고 진지하게 高見을 나누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간단하나마 개회의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995. 8. 11

民族統一研究院

院長 李秉龍

I. 主題 發表

● 司會: 金桂洙(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 發表: 朴英鎬(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
방향”

朴淳成(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빈 면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방향

朴英鎬

(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목 차 >

- I. 머리말: 광복 50주년과 통일문제
- II. 남북관계의 현황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 III. 「민족공동체」 형성에서의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의미
- IV. 민족공동체 형성방안
- V.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방향
- VI. 맺음말: 우리의 준비과제

I. 머리말: 광복 50주년과 통일문제

20세기에 접어들면서 우리 민족은 국제정세의 변화에 대처하여 민족역량을 결집하지 못함으로써 다른 민족에게 지배받는 민족사의 좌절을 경험해야만 했다. 더욱이 민족해방이라는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민족분단의 비극을 맞이하였다. 북한의 남침으로 인하여 처참한 동족상잔의 비극이 초래된 것이다. 그후에

도 40여년 동안 남북간에는 적대적 대립·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오늘날 한 민족이 분단되어 그 민족적 역량이 분산되고 있는 곳은 우리나라 뿐이다.

유구한 역사속에서 정치·경제·사회·문화적으로 공동체적 운명을 같이 해 온 우리 민족은 두개의 상이한 이데올로기, 상이한 정치체제로 인하여 두개의 상이한 사회로 변질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두개로 나누어진 민족사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회복·발전시켜 민족공동체를 완성시켜야 할 당위성을 가지게 된다.

그런데 세계사의 흐름은 냉전이후 시대의 질서를 형성하면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전환기적 상황에 있다. 정치, 경제, 종교, 기술,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역사적으로 나라와 사람들을 분리시켜 놓았던 장벽이 무너지고 소위 “하나의 세계”로 접근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¹⁾ 국가와 지역간의 교류 및 상호의존성은 비약적으로 증대되고 있으며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의 흐름을 통제할 수도 없다. 어떠한 나라도 외부세계와 단절할 수 없으며 경제적 상호의존성과 상호침투성이 증대되고 있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어떠한 강대국도 배타적인 안보독점을 누리려고 하기 보다는 집단안보 또는 공동안보를 통하여 자국의 평화와 안전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경향이 지배하고 있다.

1) John Lewis Gaddis, "Toward the Post-Cold War World," Glenn Hastedt and Kay Knickrehm (eds.), *Toward the Twenty-First Century: A Reader in World Politic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1994), pp. 42~43.

이와 함께 종래의 질서가 붕괴되면서 민족적 각성을 중심으로 새로이 민족국가를 수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으며, 종교, 인종 등과 관련된 저항도 분쟁이 확산되는 등 분열적인 힘도 냉전 이후시대의 질서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새로운 질서형성의 저변에는 인간생활의 자유화, 복지화 및 개방화를 지향하는 시대적 비전이 깔려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21세기를 준비하는 역사적 원동력은 분열적이라기 보다는 통합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른바 ‘국경없는 세계’로 표현되는 세계화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을 반영하는 것이다.

동북아지역에서도 냉전 이후시대의 신질서를 형성하려는 역사적 흐름이 태동하고 있다. 이 지역도 더 이상 자본주의국가와 사회주의국가가 심각하게 대결하는 곳은 아니다.²⁾ 지역국가간의 갈등은 이념적인 것이 아니라 자국의 이익확보를 위한 이해상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한편 북한은 공산주의 역사상 가장 오랜 기간동안 권력의 정상에서 군림하던 김일성이 사망한지 1년이 지났으나, 그렇다고 하여 세계사의 역동적인 흐름에 동참할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북한은 그동안 누적되어온 체제경직성, 심화된 경제난,³⁾ 그리고 국제적 고립 등으로 인해 체제유지의 한계상황에 봉

2) 박영호, “동북아질서와 국가자율성: 4대강국을 중심으로,” 한국국제정치학회 학술회의 발표논문 (1994. 9. 9~10, 전주 코아호텔), pp. 1~2.

3) 예컨대 북한은 1990년대에 들어 -3.7%(1990), -5.2%(1991), -7.6%(1992), -4.3%(1993), -1.7%(1994) 등 5년 연속 마이너스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 추정결과」 (1995.6), p. 3.

착한 가운데 권력내부의 구조개편 등 커다란 변화를 겪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시대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우리 민족사도 일대 전환기적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은 새로운 역사의 창출을 위한 도전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이러한 역사의 흐름은 당연히 우리로 하여금 민족의 과제인 통일문제를 다시 한번 되새기도록 요청하고 있다. 더욱이 광복 50주년을 맞는 이 시기는 남북관계 및 통일문제에 대한 우리의 정책을 재점검하여 부족하였던 점을 솔직하게 평가하고 보충함으로써 국민적 차원에서 통일을 준비해나가는 적절한 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정부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내리기 위한 개혁정책의 추진과 함께 경제적 재도약을 통해 선진경제로 진입하기 위하여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추진의 동기는 국제환경의 새로운 도전들에 대해 과거의 낡은 사고를 가지고는 적절하게 응전할 수 없으며, 따라서 새로운 정책을 개발해야 한다는 데서 출발한다.

통일환경의 변화를 살펴보면, 현 시점에서 한반도 분단의 지속상태를 통일지향적인 방향으로 돌려 놓아야 하는 우리의 과제는 과거 어느때 보다 시기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보인다. 통일에 대해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은 시급히 실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통일을 저해하는 요인들의 작용을 억제하고 새로운 부정적 상황의 발생 및 전개를 회피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다. 따라서 우리

는 현재의 복합적인 대내외 환경변화가 우리의 당면과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하여 적절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즉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이를 촉진시키는 한편 그 변화를 상승기류로 삼아 통일을 앞당기는 노력을 기울임과 동시에, 부정적인 변화에 대해서 예상되는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대비책을 세움으로써 분단의 지속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 이렇게 살펴보면 현시점의 중요성은 통일의 가능성을 인식하고 통일을 준비하기 위한 시간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하겠다.

이러한 상황적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 민족의 역사발전을 위하여 우리정부와 국민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목표를 설정한 것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 방안은 현재와 같은 분단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남북사회간 이질화가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와 향후 민족통일에 결정적 장애로 등장할 수 있다는 현실적 심각성을 인식한 결과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의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형성에서 출발하여야 하며, 민족공동체의 개념이 정치적 분단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민족의 개념과 범위를 뛰어 넘어서는 안된다는 전제를 갖게 되는 것이다. 즉 정치적 권력의 결합을 의미하는 정치적 통일은 남북 지역 주민의 공존과 공영을 바탕으로 할 때만 수용될 수 있으며, 남북간 통일의 전단계가 되는 민족공동체는 민족 구성원 모두의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는 자주적·평화적·민주적 삶의 실체가 되는 것이다.

이제 남북관계는 소모적인 체제경쟁과 정치적 대결을 지양하면

서 자유화·복지화·개방화라는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여 민족의 복리증진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이런 점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 자체의 성격에 대한 광범한 합의 도출과 이를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실천적 방안의 모색이라는 문제를 과제로 삼고 있다. 이러한 실천방안으로 구상된 것이 작년 8.15 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함께 제시된 「민족발전공동계획」이며,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은 구체적인 첫 사업인 것이다.⁴⁾

통일문제에 대한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본 논문에서는 우선 남북관계의 현 상황을 평가하고 그에 비추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성격을 검토한 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이 갖는 의미를 살펴본다. 그리고 민족공동체 형성방안과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남북관계의 현황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남북관계의 현황

광복 50주년이면서 분단 50주년을 맞는 지금 남북관계는 분단의 극복을 향하기 보다는 여전히 냉전의 틀 속에 머물러 있다. 1970년대 초반 남북대화와 접촉이 시작된 이래 남북관계는 사실

4)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0호, p. 123.

상 '제로 섬' 게임의 반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북관계는 공존과 공영이 외면된 채, 소모적인 대결관계를 지속해왔다. 냉전체제가 와해된 지금에도 남북관계는 본질적으로 해빙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물론 오늘날의 남북관계는 지난 날에 비해 상대적인 발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컨대 경제분야에서 남북한은 1994년 말 현재 총규모 1억9,455만달러(통관기준)에 달하는 교역량을 기록함으로써 한국이 북한의 3번째 교역상대국이 되었다.⁵⁾ 교역형태에 있어서도 단순 반입·반출외에, 북한의 노동력과 남한의 기술·자본이 결합되는 위탁가공교역이 증가하고 있다. 인적교류차원에서 1990년대에 들어 금년 5월 까지 총 1,316건 4,421명의 남북주민간 접촉이 이루어졌다.⁶⁾

그러나 새로운 남북관계를 형성하는 기본틀로 인식되었던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이하 「기본합의서」)를 비롯한 여러 합의들이 아직도 이행되지 않고 있는 것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북관계는 여전히 교착상태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본질적인 이유는 물론 남북간의 상호불신과 대립이 해소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상황의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은 북한의 내부사정이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현실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5)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46호, p. 10; KOTRA, 「북한뉴스레터」, 1995.5.

6)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47호, p. 4.

1980년대 후반 이후 북한은 세가지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⁷⁾

첫째, 권력승계의 안정화문제이다. 김일성은 그의 통치시대 중반기에 김정일로의 권력승계와 체제안정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그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그러한 목표는 달성되지 못했으며, 김정일의 공식적인 권력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정권의 과도기적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북한에서 김정일이 실질적으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지난 1년동안 김정일과 김일성의 一體化 시도 등 승계체제의 공고화를 위한 다양한 준비가 진행되었다.⁸⁾ 그러나 김정일의 권력승계가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가 북한정권의 불안정성과 불확실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⁹⁾

둘째, 소련을 비롯한 동구사회주의체제 붕괴 등 급격한 대외적 환경변화에 따라 북한은 심각한 외교적 고립상태에 빠져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탈피하기 위해 북한이 선택한 대안의 하나가 제

7) 나웅배, "남북관계 현황과 통일정책 추진방향," 도산 아카데미연구원 7월 조찬세미나 발표자료(1995.7.19), pp. 9~11.

8) 김정일 권력승계 준비 동향과 승계시기 전망에 대한 분석은 민족통일연구원, 「김정일 승계체제 공고화 동향」, 통일정세분석 95-04 (1995.4); 민족통일연구원, 「김일성 사후 1년: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통일정세분석 95-06 (1995.6) 참조.

9) 북한이 극단적인 형태의 스탈린주의 체제하에서 부자승계체제를 구축해 왔으나, 공산주의체제의 지도자 승계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권력 갈등현상에서 예외일 수는 없을 것이다. 공산주의체제의 지도자 변동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한 분석으로는 Raymond Taras, ed., *Leadership Change in Communist States* (Boston: Unwin Hyman, 1989), pp. 1~23 참조.

한적인 개방정책이며, 다른 하나는 「핵카드」를 사용한 미국, 일본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정책이다. 1984년 합영법 제정 이후 꾸준히 추진하고 있는 경제개방정책은 ‘북한식’ 방식의 구조적 한계로 인하여 그 성과는 아직도 미미한 상태이다.¹⁰⁾ 반면에 「핵카드」의 사용전략은 부분적인 성공을 거두어 미국과의 관계개선의 틀을 마련하였으며 일본과도 수교협상의 재개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러나 미·일과의 국교정상화는 남북관계의 개선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¹¹⁾ 현실적으로도 남한과의 교류·협력을 거부할 경우 불균형적인 개방에 따른 저발전이 초래될 수도 있다.¹²⁾

셋째, 무엇보다도 북한체제 자체를 위협하는 요인은 매우 심각한 경제난이다. 이를 몇가지의 구체적인 경제지표로 살펴보자. 북한의 교역량은 1988년도 52.4억달러를 정점으로 급격하게 줄어들어 작년에는 21.1억달러에 불과하였다.¹³⁾ 이에 따라 외채규모가 1994년말 현재 106.6억달러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북한 GNP의 50.3%를 차지하는 것이다.¹⁴⁾

산업생산의 주요소인 에너지의 경우 1994년도 원유도입량은 전

10) 이에 대해서는 최수영,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11) “북·미관계 개선이 남북관계의 진전과 병행·조화되어 추진되어야 한다”는 원칙은 1995년 7월 27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재확인되었다. 「중앙일보」, 1995.7.28.

12) 김계동, 「북한의 대미정책 - 적대에서 협력관계로의 전환모색」 「국제정치논총」, 제34집 2호(1994), p. 72.

13) 북한의 교역량은 특히 1991년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붕괴된 이후 그 규모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한국은행, 「1994년 북한 GNP 추정 결과」 (1995.6), p. 4.

14) 위의 자료, p. 8.

년도에 비해 33.1% 줄어든 91만톤에 불과하고 석탄생산량도 감소세가 지속되었다.¹⁵⁾ 식량사정은 북한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다 극명하게 보여준다. 북한의 식량수요는 연간 650~670만톤으로 추정되는데, 그중 자체적으로 공급하는 양은 400만톤 전후에 불과하다. 따라서 북한은 1992년 이래 매년 200~250만톤의 만성적인 식량부족현상을 겪고 있다.¹⁶⁾ 결국 북한경제는 식량난, 에너지난 등으로 인해 공장가동률이 4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지난 5년동안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요컨대 북한의 중앙집권적 계획경제체제는 과도한 국방비 지출로 인한 민간부문의 투자재원 부족,¹⁷⁾ 사회주의권 붕괴로 인한 최소한의 시장 상실, 경화의 부족과 누적된 외채, 이에 따른 자본 및 기술도입의 원천적 봉쇄 등 여러가지 요인들이 구조적으로 연계되어 악순환하는 한계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이와 같은 과도적인 정치상황의 지속, 외교적 고립, 그리고 심

15) 북한 에너지공급의 대종을 이루는 석탄생산은 탄층심화 등 채굴여건의 악화로 1993년도 -7.2% 생산에 이어 1994년도에도 -6.3% 생산되었다. 한국은행, 「1994년도 북한 GNP 추정결과」 (1995.6), p. 5.

16) 민족통일연구원, 「북한의 식량지원 요청 배경과 대북한 식량 지원 방안」, 통일경제분석 95-05 (1995.6), pp. 2~3.

17) 1994년도 군사비는 총세출예산 188.8억달러의 30%에 달하는 56.6억달러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1994년도 북한 GNP 추정결과」, p. 8. 그러나 북한에는 인민경제와는 별도로 군부가 독자적으로 광산, 농장, 무기군복공장, 무역회사 등을 운영하는 군사경제가 존재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국민총생산의 20~4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미국경제연구원, 「북한경제」, 1995) 되기도 한다. 「조선일보」, 1995.7.29. 북한의 군사경제 규모에 대해 북한의 강성산총리의 사위였던 강명도는 70%에 달한다고 주장한다. 민족통일원 원내 초청세미나 (1995.8.1).

각한 경제난 등 三重苦에 따른 총체적 난국을 타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북한은 핵무기 개발 카드를 수단으로 이용한 미·일 등 서방과의 관계개선 전략¹⁸⁾과 대남긴장관계 조성을 통한 체제안정화 전략을 추진해왔다. 특히 북한은 1993년 6월 미국과의 협상채널이 형성된 이후 남한을 배제하는 전략을 고수하고, 1994년 4월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요구한 이후 정전협정을 무실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함으로써¹⁹⁾ 남북관계를 경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남북관계의 긴장국면을 유지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단기적 차원에 머무는 것에 불과하다.²⁰⁾ 북한체제의 대내외적인 조건은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하는 ‘우리식’을 고수할 수 없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980년대 이후 북한의 대남정책은 대내외적 상황변화에 적응하기 위하여 「남조선혁명전략을 통한 하나의 조선」을 목표로 하는 패권적 혁명전략으로부터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배제하고 분단상태의 현상유지를 목표로

18) 북한의 핵무기 개발 의도 및 전략에 대한 자세한 설명으로는 민족통일연구원,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25~75 참조.

19) 1994년 4월 28일 군사정전위원회 북한측 대표를 철수시킨 이후 북한은 군정위 중국측 대표를 철수('94.12.15)시키고, 중립국감독위원회의 폴란드 대표마저 철수('95.2.28)시킴으로써 정전협정 기구의 기능을 사실상 마비시켰다. 이에 더하여 북한은 외교부 비망록('95.6.29) 등을 통해 주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20) 나진·선봉 자유무역지대 등 북한의 대외개방정책의 구체적 사업들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투자가 북한의 기대대로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사회간접시설의 미비, 투자유인동기 부족 등 기반여건이 정비되지 않은 것에도 원인이 있으나, 남북관계가 진전되지 않는 데 따른 북한의 의도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회의적인 자세도 원인이 되고 있다.

하는 현상유지적 경쟁전략으로 방향이 전환되고 있다.²¹⁾

북한은 남북관계의 개선이 북한체제의 생존과 유지를 위해 필요로 하는 외부세계와의 교류 및 협력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에 남한과의 대화와 접촉을 재개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이 「한국형 경수로」를 간접적으로 수용하고, 한국이 제공하는 쌀을 수용한 것도 결국 북한의 활로가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을 통해서만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²²⁾

2.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성격과 이행구도

지난날 우리는 정부의 정통성 결여와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지지기반이 미약함으로 해서 통일문제를 둘러싼 내부적 갈등과 혼란을 경험하였다. 또한 통일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부응할 만큼 남북관계가 개선되지 못함으로써 통일에의 희망과 현실의 괴리가 점점 커지게 되었다. 사실 한반도에서 무력통일이나 어느 일방의 급격한 붕괴에 의한 통일의 가능성을 배제한다면, 남북관계의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통일이 당장 실현되기는 어렵다. 특히 독일통일의 경험이 주는 중요한 교훈의 하나는 이질

21) 민족통일연구원,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북한의 대남정책, 통일정세분석 93-04, pp. 2~4.

22) 1993년 4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 제9기 제5차 회의에서 채택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은 본질적으로 북한의 통일전선전술사업의 태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나, 보다 긍정적인 차원에서 보면 남한과의 공존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북한의 태도변화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적인 체제하에서 사회화과정을 거친 동서독 지역주민들간에 민족 정체성의 분화가 심화되고, 통일 이후 심각한 국민통합의 문제로 대두된다는 점이다.²³⁾ 그러나 통일이 불가능하다거나 필요없다고 주장하는 편협하고도 패배주의적 통일관을 가질 필요는 없다.

결국 우리의 통일은 민족사적 관점에 입각한 통일의 당위성, 남북관계의 현실, 그리고 통일조국의 미래를 고려하면서 실현가능한 통일정책과 방안을 강구하는 현실주의적 통일관이 구현되는 것이라고 하겠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러한 관점에서 통일의 역사적 당위성, 변화하는 통일환경, 바람직한 미래상, 그리고 실현가능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민족통일의 大綱이라고 할 수 있다.²⁴⁾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특히 1980년대 초반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에서부터 비롯된 ‘민족’개념을 중심으로 한 통일접근의 발전된 산물이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남북한 주민의 인간적인 삶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기본철학으로서 자유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사실상 자유민주주의는 그것이 지닌 이념의 포괄성, 목적과 수단의 일치성이란 높은 윤리성 때문에 인류역사상, 최선의 이념체계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강력한 적대적인 정

23) Konrad-Adenauer-Stiftung, *Zusammenwachsen oder Auseinanderdriften?*, in: *Interne Studien*, Nr. 78-1994, Sankt Augustin, Dezember 1994; 주독대사관, “통일 독일의 정체성 관련 분석” (1), (2) (번역 800-9506-10 및 800-9506-11) 참조.

24)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체계에 대한 자세한 분석으로는 민족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치이데올로기였던 파시즘, 공산주의 등이 자체모순과 결점으로 인해 결국 파멸, 붕괴하는 과정을 목격하였다는 점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민족통일의 보편적 가치지향으로 삼아야 하는 정당성이 있다. 그리고 통일을 이루어나가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으로는 그동안 견지해온 자주, 평화, 민주를 재강조하고 있다.

한편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자유, 복지, 인간의 존엄성이 보장되는 선진민주국가」를 통일국가의 미래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통일이 분단된 남북한의 물리적 결합을 달성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민족구성원 모두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통일의 비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통일국가의 미래상은 통일국가의 이상인 동시에, 통일에 대비해서 우리가 추진해야 할 종합적인 정책과제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것이다.²⁵⁾

다음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행구도를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집합체의 의미로서 사용되고 있는 공동체란 구성원들이 동질적인 신념과 가치관의 공유를 바탕으로 직접적이고 다면적인 상호관계를 가지며 호혜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집단을 말한다.²⁶⁾ 따라서 우리가 달성해야 할 민족공동체는 남북한 주민 모두가 민족적 동질성을 바탕으로 공동의 가치관과 신념에 입각하여 민족단위의 생존과 번영을 지향하여 집단생활을 영

25) 박종철,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우리의 대북정책,” 「金日成 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55.

26) Michael Taylor, *Community, Anarchy, and Libert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2); 김종립, “남북한통일을 위한 민족공동체 형성 이론,” 국토통일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서울: 국토통일원, 1990), p. 61 재인용.

위하는 생활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족공동체는 생산과 분배, 거래행위의 단일권 형성을 의미하는 경제공동체, 사회적 가치규범과 행위, 그리고 문화의 공유를 의미하는 사회·문화공동체, 그리고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는 정치공동체의 형성으로 완성된다.

그런데 남북한은 오랫동안 단일민족사회로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온 역사적 경험에도 불구하고, 분단 이후 반세기 이상의 극단적인 반목과 대결구도 속에서 제도상의 차이와 불균형이 심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생활양식, 전통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치관마저도 크게 달라졌다. 분단 이후 생성·발전된 남북주민간의 이질성으로 말미암아 한민족이 남북한에서 별개의 민족으로 발전하며 살아왔다고 보는 것이 현실적인 인식일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남북한 주민들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이와 같은 공동체 형성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그리고 「통일국가 완성단계」로 이어지는 3단계의 이행구도로 제시하고 있는데, 그 기본골격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제1단계인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상호 적대와 대립관계를 청산하고, 상호 신뢰 속에 긴장완화와 화해를 정착시켜 나가면서 실질적인 교류·협력을 실시함으로써 화해적 공존을 추구

한다. 특히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상호체제의 인정과 존중을 바탕으로 사회·문화·경제 등 각 분야의 교류·협력을 쌓는 것이 강조되고 있다.

「화해·협력단계」 과정을 거치면서 상호 신뢰가 쌓이면, 남북간의 공존을 제도화하는 과도적인 통일체로서 제2단계인 「남북연합단계」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남북한이 평화를 정착시키면서 공존공영하는 경제·사회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키는 한편, 제도적인 차원에서는 남북연합기구들이 창설·운영되게 된다.

마지막 제3단계인 「통일국가 완성단계」에서는 「남북연합단계」에서 구축된 민족공동생활권을 바탕으로 정치공동체를 실현하여 남북의 두 체제를 완전히 통합하는 1민족 1국가의 단일국가로의 통일을 완성하게 된다.

통일의 단계와 민족공동체 완성과정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 민족공동체 형성단계

통일단계	화해·협력단계	남북연합단계	통일국가 완성단계
국가·체제	1민족2국가2체제	1민족2국가2체제	1민족1국가1체제
공동체유형	사회·문화·경제공동체		
	정치공동체		

Ⅲ. 「민족공동체」 형성에서의 「민족발전공동계획」 의 의미

1. 협의의 의미

민족공동체를 통한 통일의 달성은 무엇보다도 통일의 의미를 단순한 정치체제의 결합으로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공존과 남북한 화해·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한민족 모두의 삶의 질을 높이고 민족동질성을 회복시킴으로써 민족공동체를 형성한다는 것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한만의 발전이 아니라 북한의 안정과 발전이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민족공동체의 형성을 통한 통일과정이 우선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적·사회적 생활영역으로 묶으려는 시도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때,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 전체의 복리향상이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²⁷⁾

더욱이 지금 세계는 체제와 국경의 장벽을 허물고 서로의 문호를 개방하여 상호의존을 심화시킴으로써 평화와 번영을 지향해 나가고 있다. 국제사회를 움직이는 것은 이제 이념과 군사력 보다는 경제력과 실리추구의 경쟁이다. 특히 자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른 나라의 희생을 요구하는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 공허한 이념이나 명분의 대결에 민족적 에너지를 소모한다면 통일은 한낱 공허한 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민족공동체는 단

27) 조민, 「민족공동체 형성방안을 통한 통일과정」, 민족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08~109.

순히 관념적인 상태로 머무르지 않고 구체적인 내용으로 채워질 때 통일의 실천적인 기제로써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의 공존공영과 복리증진을 남북관계의 중심으로 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²⁸⁾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조국도 민족구성원 개개인의 복지가 보장되고 모두가 골고루 잘사는 선진된 나라이다. 그러므로 지금부터라도 남북한이 민족공동체 건설과 민족복리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가 북한에 대하여 경수로 전환을 비롯한 평화적 핵에너지 개발에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것을 표명하고,²⁹⁾ 1995년 6월 북경에서 열린 남북당국간 회담에서 15만톤의 쌀을 무상으로 제공하기로 합의한 정책적 근거가 바로 통일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남북한의 공동의 발전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것이 바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해 나가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지표로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이 갖는 경제적 의미인 것이다.

요약해서 말하면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북한이 공동의 주체가 되어 민족발전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고, 이러한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발전시킴으로써 민족구성원 모두의 복리 실현을 목표로 하는 구체적인 사업 설계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8) 북한도 1993년 4월 7일 발표된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 제3항 민족대단결의 원칙으로 “공존·공영·공리의 도모”를 언급하였는 바, 이를 남북관계의 개선을 위한 실마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29) 김영삼대통령 광복 49주년 기념식 경축사 (1994.8.15).

2. 광의의 의미

민족공동체는 우리의 통일정책을 이끌어가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공동체는 민족을 하나로 묶는 틀일뿐 아니라, 민족재결합의 당위를 제공하고 그 자체가 통일을 추진하는 원동력이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 근대적인 민족국가를 완성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따라서 민족공동체 형성을 통한 통일이 근대민족국가의 완성을 의미한다고 할 때, 「민족발전공동계획」의 내용은 경제적 영역에서의 발전계획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군사적 영역에서의 화해·협력은 물론 대외관계에 있어서의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는 것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경제분야에서의 남북한 공동발전을 통한 물질적 번영을 추구하고으로써 타 분야에서의 협력관계를 유발할 수도 있으나, 타 분야에서의 화해·협력관계가 동반되지 않을 경우 경제공동체 형성 과정 자체가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이유는 남한과 북한에 있는 우리 민족이 하나의 민족으로서 합쳐지는 민족생존과 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21세기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즉 「민족발전공동계획」은 우리 민족 모두가 더불어 잘 살아가는 민족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물론 민족공동체가 성립된 이후에도 한민족이 생활운명을 같이하는 사회집단으로서 총체적인 유대관계를 형성하는데 도움을 주는 종합적

인 계획을 말한다.

다시 말해 「민족발전공동계획」의 넓은 의미는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남북한이 협력³⁰⁾하여 근대적 민족국가를 완성하고, 나아가 통일한국이 세계사회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국가대전략의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민족공동체의 개념이 어느 특정한 집단이나 계급 또는 세력에 의한 권력장악이나 국가체제의 조립을 통일로 보기 보다는 우리 민족구성원 모두가 주체가 되어 어떻게 함께 살아가느냐에 통일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민족공동체의 결속을 유지시키는 결합력으로써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중요성이 존재한다.

IV. 민족공동체 형성방안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구도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실천해야 할 내용들은 「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에 반영되어 있다.³¹⁾ 남북한 민족공동체의 형성은 화해·협력단

30) 여기에서 남북간의 협력이란 남북한이 각기의 정책조정과정을 통하여 상대방의 실제적 또는 예상되는 정책에 자국의 정책을 적응시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협력의 정의에 대해서는 Kenneth A. Oye, "Explain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Hypothesis and Strategy," in Kenneth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 6.

31) 예컨대 「기본합의서」의 제3장에서는 남북교류·협력의 목표를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제15조)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경제·사회·문화 분야 및 국제협력의 대체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계 → 남북연합단계 → 통일국가 완성단계의 3단계로 연결되어 있는 각 단계별 성과의 축적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그러나 남북간 정치·군사적 및 이념적 대결로 말미암아 「기본합의서」의 채택에도 불구하고 사회·문화·경제분야의 교류·협력이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사회·문화·경제분야의 교류·협력과 함께 정치·군사적 대립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도 병행 실시되어야 한다.

또한 각 단계는 상호 연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상당한 질적 차이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양적인 축적을 통한 남북관계의 진전을 바탕으로 하면서 동시에 질적인 변화를 통하여 단계전환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단계간 전환을 위해서는 정치·군사적 문제의 복잡성과 함께 정치협상의 어려움을 충분히 감안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통일과정의 각 단계에서 추진되어야 할 분야별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경제공동체, 사회·문화공동체, 그리고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는 민족통일大計를 개략해 본다.

1. 화해·협력단계

화해·협력단계는 「1민족 2국가 2체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남북한이 사회·문화·경제 분야에서 점차로 교류·협력을 증대시키고, 동시에 정치적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남북간 평화공존체제를 정착시켜 나가는 단계이다. 1992년 2월과 9월에 각기 발효된 「기본합의

서」 및 분야별 「부속합의서」의 이행·실천에 의해서 남북 화해·협력관계가 제도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는 무엇보다도 화해 및 교류·협력분야에서 남북한이 상호신뢰를 구축함으로써 본격적인 교류·협력의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남북간에 상호 체제인정·존중, 내부문제 불간섭, 비방·중상 금지, 파괴·전복행위 중지 등이 정치적 신뢰를 쌓기 위해 이행되어야 할 내용들이다. 그러나 남북관계가 상호불신과 대립의 구조에서 벗어 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이기 때문에, 비정치분야에서부터 신뢰구축을 위한 협력사업을 먼저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회·문화분야에서의 인적 왕래와 교류·협력은 남북간 동질성을 회복하고 북한사회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개방 여파를 우려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소극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다. 특히 북한은 언론·방송교류를 최대한 지연시키고자 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개혁·개방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까지 사회·문화의 교류·협력은 남북간 직접교류방식 보다는 제3국에서의 간접교류를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중국 연변 등 해외에 민간이 주도하는 「남북문화교류센터」를 설립하고, 이를 통하여 각종 학술교류 및 문화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상호이해와 교류·협력의 기반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으로 남북간 교류·협력은 단계성과 순차성에 입각하여 추

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선 남북교류의 경험이 있는 분야, 북한이 우월하다고 여기는 분야 등 실현가능성이 높은 분야부터 교류·협력을 시작하여, 비정치적이고 비이념적인 체육, 과학·기술분야의 교류·협력, 정치성과 이념성이 내포되기 쉬운 교육·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언론·방송·출판분야의 교류·협력 순으로 실시한다.

화해·협력단계에서의 경제교류·협력은 북한의 경제개방·개혁 지원, 남북경제의 상호의존도 증가 등을 목표로 남북교역의 확대, 합작사업, 자원의 공동개발, 다자간 경제협력 등을 추진한다.

그러나 남북간 직교역이 확대되는 데에는 여러가지 장애요인이 있다. 북한은 단기적 경제실리를 위하여 남북교역에 임하면서도 직접교역의 확대를 회피해 왔다. 왜냐하면 직교역에 수반되는 인적 교류 및 정보교류가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은 직교역의 확대보다는 위탁가공이나 합작투자의 방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바, 우선 위탁가공교역의 활성화를 통해 남북교역의 확대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³²⁾ 남북합작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경우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자원이 결합되는 형태가 될 것이다.

한편 공동어로수역의 설정에 의한 수자원의 공동개발, 지하자원의 공동개발, 관광자원의 공동개발 등을 통하여 남북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협력경험을 축적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와

32) 최수영,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66.

함께 제3국에서의 자원공동개발이나 합작진출 및 생산 등을 추진하고, 유엔개발계획(UNDP),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 등 다자간 경제협력기구를 통한 남북경제협력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의 화해·협력은 상호신뢰를 구축하고 남북대립을 완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엔 및 그 산하기관과 기타 국제기구 및 국제회의, 그리고 제3국과의 관계에서 남북간 상호비방을 자제하고 협력을 확대하도록 한다. 북한이 경제난 타개를 위해 해외자본 및 기술의 도입과 수출증대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세계은행(IBR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경제기구에 대한 북한의 가입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각종 교류·협력을 통하여 국제적 협력을 확대하고 남북간 직접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촉진시켜야 한다. 제3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국제회의나 학술대회, 문화·예술행사, 체육행사 등에 남북대표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사회·문화·경제분야에서의 교류·협력 활성화와 함께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을 추진해야 한다. 군사적 신뢰구축과 관련하여 기초 군사정보 교환, 군사훈련의 통보 및 상호참관, 군인사의 상호 교류, 군사직통전화설치 등이 실행됨으로써 군사활동의 투명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남북간 일정규모 이상의 군사훈련을 제한하고 군사훈련의 범위도 단계적으로 축소해야 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팀스피리트훈련의 규모조정 및 중지문제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 화해·협력단계가 남북연합단계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남북간 평화체제의 확립이 중요하다. 남북평화체제로의 전환은 전환시기, 협상당사자, 평화체제전환의 형식, 유엔군 사령부의 해체, 주한미군문제 등과 같은 복잡한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는 바,³³⁾ 남북당사자 해결의 구도속에서 문제가 해결되도록 추진한다. 이와 함께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의체가 구체화될 경우 북한의 참가문제, 북한 핵문제, 한반도군축, 남북평화체제보장 등의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한국은 이러한 다자간 안보협의체에 적극 참여하여 남북평화체제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화해·협력단계에서 사회·문화 및 경제분야의 활성화와 함께 정치·군사적 측면의 관계개선이 병행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남북한은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화해·협력단계에서는 남북고위급회담의 테두리내에서 각급 분과위원회 및 공동위원회를 정례화시킴으로써 남북관계의 틀을 정착시켜야 한다. 남북한은 화해·협력관계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남북정상회담을 개최하여 남북연합단계로 전환하기 위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은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한국전쟁 등 과거청산문제, 평화체제로의 전환 및 보장방안,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남북관계의 기본성격, 통일방안, 남북연합의 설정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한 합의를 거쳐서 이를 토대로 「남북연합헌장」을 채택함으로써 남북연합단계로 진입할 것이다.

33)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성호,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전략: 내용, 의도 및 문제점,” 민족통일연구원,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방안 모색」, 제16회 국내학술회의 발표논문집 (1995.6.21) 참조.

2. 남북연합단계

남북연합은 통일을 지향하는 과도적 단계로서 국제법적으로는 부분적으로 국가연합의 성격을 띠고 있지만 주권국가간의 관계를 상징하는 국가연합과는 다른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첫째,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은 대외적 측면에서 국제법적 주권국가로 존재하기 때문에 남북연합은 분명히 연방과는 다르다. 둘째,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한은 통일국가를 달성하기 위해서 「민족 내부의 특수관계」를 유지하면서 남북현안 및 통일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고 협력의 범위를 넓혀 간다. 이런 점에서 남북연합은 과도기적 협의체이며 독립된 국가간의 관계를 가정하고 있는 일반적인 의미의 국가연합과도 다르다.

남북연합단계에서 북한은 탈전체주의정책을 통하여 사회에 대한 획일적 통제를 부분적으로 완화하고 제한된 영역에서 사회의 자율성을 허용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연합단계에서 사회·문화분야의 각종 민간단체를 통하여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체육, 문화·예술,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공동활동을 확대함으로써 북한의 다원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남북간 동질성을 증진시켜야 한다.

그러나 북한사회의 다원화가 완전히 진전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단체간의 교류는 제한된 영역내에서 이루어질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감안되어야 한다. 따라서 민간단체간의 교류·협력은 북한측을 자극하지 않도록 점진적이고 단계적 절차를 통해서 추진되어야 하며, 실질적으로 북한측 단체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한편 「평화시」(가칭)내에 공동체육시설, 청소년

공동생활센터, 공동문화센터 등을 건립함으로써 남북공동활동의 공간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동문화건설이 건립되면 이곳을 중심으로 각종 교류와 공동활동이 확대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 북한은 경제특구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중국모델과 유사한 적극적인 수출드라이브 정책과 경제성장을 위한 개방·개혁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³⁴⁾ 따라서 북한의 이러한 경제개혁조치에 상응하여 남북간에는 산업구조조정과 북한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동투자, 북한의 개혁조치에 대한 지원, 자유무역협정 및 관세동맹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³⁵⁾

그리고 남북한의 부존자원과 생산요소의 이용에 경제성과 상호보완성을 극대화하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남북한 경제의 부문별 통합을 추진하는 「남북한 석탄·철강공동체」, 「남북한 원자력공동체」, 「남북한 전자산업공동체」, 「산업구조조정협의회」 등을 구성을 추진한다. 이 기구들은 「남북연합」의 기구로 편입되어 경제공동체 실현을 위한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기여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북한은 생산수단의 민영화, 기업활동에 대한 통제의 철폐 그리고 가격개혁을 단행함으로써 점차 시장경제체제로 이행하게 될 것이다.

국제무대에서는 남북한이 해외공관간의 협력과 국제기구에서의

34) 북한의 경제개혁·개방에 있어서의 중국모델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분석으로는 Seung-Yul Oh, "Economic Reform in North Korea: Is China's Reform Model Relevant to North Korea?"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 1993, pp. 127~151 참조.

35) 김국신·이유진,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18~128.

공동보조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간 외교대결의 부산물로 생겨난 불필요한 지역의 해외공관을 축소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협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비무장지대의 비무장화와 평화적 이용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비무장지대에 설치된 모든 군사시설과 장비 및 병력을 단계적으로 철수함으로써 비무장지대를 비무장화시켜야 할 것이다. 그 다음 이 지역내에 평화구역을 설정하여 각종 남북연합의 기구 및 각종 회의시설, 남북문화·체육센터, 이산가족면회소, 민속박물관, 남북교류행사장 등을 마련하여 「통일시」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북연합단계에서 군축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기습공격과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이 취해져야 한다. 군사분계선 및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활동을 금지하고 「공세전력배치 제한지대」를 설정하여 공격용 무기 및 병력을 후방지역으로 이동배치하는 방법도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 핵시설에 대한 특별사찰이 실시되고 생화학무기 등 대량살상무기의 단계적 폐기와 장갑차, 미사일, 상륙함정 등 공격용무기의 감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재래식 무기와 병력에 대한 감축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군축은 남북한의 공동감시단 및 검증위원회 등에 의한 감시 및 검증을 수반해야 한다. 이와 함께 남북간 군축의 진전과 전반적인 남북관계의 진전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의 단계적 감축도 추진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남북연합단계에서는 화해·협력단계의 남북대화창구를 발전

시켜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공동사무처, 상주 연락대표부, 남북분쟁해결기구 등의 정치제도들을 구성·운영해야 한다. 이러한 정치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통일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통일에 대비하여 권력구조, 선거제도, 정치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북한체제에서 이데올로기의 영향력이 약화되고 사회·문화구조가 제한적이거나 다원화되며 실용주의적 가치관이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제한적 다원화를 더욱 촉진하고 남북간 동질성을 확대하기 위하여 북한의 인권개선 및 민주화를 더욱 촉구하는 한편, 북한의 정치적 변화정도를 감안하여 정치단체 및 정당간 교류를 실시함으로써 이념적·정치적 영역에서 상호이해와 협력의 범위를 넓혀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이념 및 가치관에서의 동질성 증대는 남북한 정치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기반으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한은 경제·사회·문화공동체를 점차로 심화시키는 한편, 남북연합기구를 통하여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통일국가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통일시기,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조치, 통일국가의 대내외 정책 등에 관해서 남북간 「통일조약」을 채택해야 할 것이다. 통일시기와 통일절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통일헌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통일헌법이 확정되면 통일헌법에 따라 남북총선거를 실시하여 통일정부와 통일국회를 결성함으로써 남북한은 통일국가의 단계, 즉 정치공동체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

3. 통일국가 완성단계

통일국가에 이르는 과정 및 시기는 남북연합단계까지의 남북관계의 성격 및 남북한의 이념, 정치체제 면에서의 동질화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남북연합단계에서 남북통합의 성과에 따라서 통일국가에 이르는 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고 연장될 수도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통일국가에 이르기까지의 물리적인 시간보다는 어떻게 하면 통일과정 및 통일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통일후 효과적으로 남북통합을 이룩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사회·문화의 각 영역별로 남북한의 민간단체들의 통합을 추진함으로써 민간차원에서 남북간 공동활동의 경험을 축적하고 북한지역 주민들이 통일후 급격한 사회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북한지역에 사회·문화시설의 확충을 지원하고 문화생활의 기회를 확대하는 방안을 실시한다. 예를 들면 문화센터 설립, 종교단체 설립, 의료시설 및 사회시설 확대, 문화·예술인 지원방안 등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지역에 자생적인 사회·문화활동이 활성화되도록 북한지역의 문화·예술활동에 대한 특별지원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³⁶⁾

경제분야에서는 북한경제체제를 시장경제체제로 완전히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시장형성과 화폐통합, 북한지역에 대한 대규모

36) 윤덕희·김도태, 「남북한 사회 문화공동체 형성방안: 사회 문화적 동질성 증대방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50~155.

투자, 실업대책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공동시장형성을 위하여 남북간 경제관련 행정절차와 법규, 세제 등이 통일되어야 한다. 그리고 화폐통합은 북한 경제력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기초로 하여 북한지역 주민의 생활수준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북한지역의 토지 및 기업의 사유화, 북한지역 기업의 경영합리화,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유치 방안 등이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남북한이 독자적으로 맺고 있던 각종 조약 및 협정을 포함한 제도적 정비를 추진 하는 한편, 민간차원에서 대외관계도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국방분야에서는 군의 통합방안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통일후 정치제도는 남북한의 지역갈등과 세대갈등, 계층갈등과 각종 이익균열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절차와 조치를 마련 하다는 관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권력구조와 의회제도, 선거제도, 정당제도,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 권한배분 문제 등이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³⁷⁾

그리고 통일후 이념적·정치적 갈등을 줄이기 위해서 남북한 주민에 대해서 다양한 형태의 통일교육을 실시하고 북한의 전직 공직자에 대해서 체계적인 재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³⁸⁾

37) 이에 대해서는 박종철, 「통일한국의 정당제도와 선거제도」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최진욱, 「통일한국의 권력구조」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등을 참조.

38) 통일과정 및 이후에 발생하는 정치·사회적 갈등 및 그 해소방안에 대해서는 박영호, 「통일 이후 국민통합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V.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방향

1. 정책목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이와 같이 단계적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추진해야 할 구체적인 사업을 실천하는 작업이다. 그런데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한과 북한이 민족공동의 발전을 위해서 함께 참여하자는 것이다. 그러므로 남북한이 합의하여 발효시킨 「기본합의서」와 분야별 「부속합의서」로부터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추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서들은 「남북연합」이 제도화되기 이전의 단계인 「화해·협력단계」의 남북관계를 규율하는 기본규범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의 성실한 이행과 준수는 남북한의 공동노력을 요구한다.³⁹⁾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전문에서 상호간의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여 민족적 화해를 이룩하고, 무력에 의한 침략과 충돌을 막고 긴장 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며, 다각적인 교류·협력을 실현하여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도모”하기로 합의하고, 분야별 「부속합의서」에서는 그러한 합의를 이행·준수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에 합의하였다. 따라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근본적인 정책목표는 이러한 합의사항의 이행과 실천에 있다. 다시 말해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기본합의서」의

39) 임동원, “남북고위급회담의 전개과정: 1989.2~1992.2,” 청농 강영훈박사 고회기념논문집 간행위원회, 「민족통일의 길」(서울: 법문사, 1992), p. 421.

기본정신을 구현하려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를 구체적인 목표로 나열하면, 첫째, 상호불신과 대결의 남북관계를 개선하여 화해하고 협력하는 공존공영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둘째, 한반도에 공고한 평화를 정착시켜 평화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의 물질적·정신적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한편, 북한 스스로 개방과 개혁을 추진하여 북한체제의 민주화와 다원화를 이루도록 하려는 것이다.

넷째, 남북간의 자유로운 통행과 통신 그리고 통상을 촉진하여 남북간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점진적으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려는 것이다.

다섯째, 국제사회에서 민족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민족의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써 민족의 존엄을 옹호·발전시키려는 것이다.

2. 정책방향과 추진전략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남북한이 함께 설계하자는 공존공영의 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민족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한 실천작업으로서의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북한이 함께 추진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념 및 정치·경제체제면에서 40년 이상 대립해 왔다는 점에서 남북한이 처음부터 공동으로 작업을 추진하기는 어렵다. 또한 북한이 남북관계의 개선에 대하여 상당기간 동안 소극적인 태도를 견지할 것으

로 예상됨에 따라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작업은 우선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한국정부는 「민족발전공동계획」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은 한마디로 남북한 사이의 거래와 접촉을 증대시킴으로써 남북한이 서로의 태도, 인식 및 행위를 보다 잘 이해하고 협력을 증진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첫째, 남북관계에서의 상호 득실구조, 즉 선호구조를 변경시킨다. 남북한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이해득실의 차이를 변경함으로써 남북관계에 임하는 북한의 태도 및 인식을 변화시켜 북한으로 하여금 단기적인 이익을 얻기 위하여 약속을 위반하려는 동기 보다는 장기적인 상호협력의 동기를 갖도록 한다.

둘째, 남북한 쌍방의 미래이익이 증진되도록 한다. 특히 남북한이 서로 협력함으로써 북한으로 하여금 추가적인 이익을 기대하게 하고, 또한 상호간의 이해관계의 규칙성을 제고시키는 것이다.

셋째, 남북한의 호혜관계(reciprocity)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킨다. 즉, 남북한 협력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불필요한 이탈행위를 방지하고, 북한에게 남한의 행위의도를 명백히 인식시키는 학습과정을 말 하는 것이다. 호혜관계에 기초한 협력은 무조건적인 협력보다는 안정성을 갖게 된다.⁴⁰⁾

넷째, 남북한이 상호 거래행위의 의도에 대한 인식능력을 강화하도록 한다. 남북한 협력의 증대는 서로의 행위에 대한 신뢰도

40) Robert Axelord, *The Evolution of Cooperation* (New York: Basic Books Inc., Publishers, 1984), pp. 136~139, 169~170.

의 수준에 바탕을 둔다. 이러한 의미에서 정상회담은 상대방에게 자신을 효과적으로 인식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⁴¹⁾

다섯째, 남북한 협력의 보장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관련국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 등 다자간 협의체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이러한 정책방향 아래에서 다음과 같은 단계적인 추진전략을 구사하도록 한다.

첫째, 남북한이 서로 화해하여 공존공영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의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미 남북한은 「기본합의서」 및 부문별 「부속합의서」를 통하여 화해를 조성한다는 의지의 일단을 보여 주었고, 한국정부는 북한과의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북한의 개혁·개방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성공적인 결과를 산출하지 못하고 있으나, 그러한 정책을 변경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북한에 대한 일방적인 화해조치와 협력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도 있다.

둘째, 남북한 사이의 부분적인 화해조치와 협력을 여러분야에 걸친 구체적이고도 실질적인 협력으로 확산시켜 남북한간에 상호 의존관계가 출현하도록 한다.

만약 북한의 정책이 최소한 표면적 또는 묵시적으로라도 공존

41) Robert Axelrod and Robert O. Keohane, "Achieving Cooperation under Anarchy: Strategies and Institutions," in Kenneth A. Oye, ed., *Cooperation under Anarch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pp. 247~248.

공영의 방향으로 나타날 경우, 한국은 일방적인 화해조치의 수준을 높이거나 북한에게 이익획득의 기대수준을 높여 주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상호간의 협력기반을 강화한다. 남북한이 상호 각각의 이익 및 공동이익을 위하여 협력하는 정향이 배태되면 한 영역에서의 협력이 다른 영역에서의 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북한에 대하여 부수적인 보상의 기대를 유발시키는 정책방안을 제의한다. 이 단계에서 한국은 북한에 대하여 남북이 협력함으로써 북한이 원하는 이익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실히 인식시키는 동시에, 협력에서의 이탈이 더 큰 불이익을 초래할 수 밖에 없도록 제한적인 연계전략을 사용함으로써 남북한간의 협력 구조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남북한 화해·협력의 질적 심화를 통하여 남북한 협력을 제도적 차원으로 정착시키도록 한다.

이 단계는 「남북연합」의 실현과 상응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남북간 협력의 확대는 물론 새로운 민족공동의 이익을 개발하고, 각 분야별로 공동협력기구를 구성·운영함으로써 남북한 협력의 통합적 운영체제를 마련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3. 주요 정책과제

가. 정치·군사분야

정치·군사적 화해조치와 관련하여 현 상황에서 가장 중시되어야

할 사안은 상호체제의 실질적인 인정문제와 정전체제를 대체하는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문제이다.⁴²⁾ 남북한은 독립된 국가로서 유엔에 가입하고 있는 한편, 상호간의 관계를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특수한 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은 조선노동당 규약에 명시되어 있는 남한사회의 혁명을 통해 통일을 달성한다는 전문을 수정하지 않는 반면, 남한은 국내법상의 영토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법적 관할권이 북한지역에 까지 미친다는 주장을 견지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남북관계의 정치적 화해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평화체제 구축문제 또한 현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 체결의 당사자 문제가 대두되어 있는 바,⁴³⁾ 한국정부의 당사자 지위를 거부하는 북한이 기존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한 정전협정의 실질적 당사자인 한국이 북한과 여타 국가들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수용할 수는 없을 것이다. 결국 이와 같은 남북관계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때, 상대방의 논리를 완전히 무시한 채 자신의 주장만을 되풀이한다면 상호간의 정치적 화해와 군사적 신뢰구축에는 근원적인 한계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은 상호간에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어떠한 작은 조치라도 우선적으로 행동으로 옮기면서 상대에 대한 선의를 표

42) 길정우, “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비방안: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민족통일연구원,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체계와 실천방향,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pp. 156~168 참조.

43)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성호, “북한의 대미평화협정 체결 전략: 내용, 의도 및 문제점,” pp. 51~58 참조.

명하고 이를 기초로 신뢰를 점차적으로 축적해가는 신중하고 인내심있는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 그러나 팀스피리트훈련 중단과 비무장지대에 전진배치된 병력의 후방이동 및 남북간 군사직통전화 설치 등이 상호신뢰 구축을 위한 실효성있는 조치로써 제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북한의 상응하는 변화의 조짐이 전제되지 않는 한, 한국의 일방적 조치에는 한계가 있다.

한편, 북한측의 북·미 평화협정 체결 주장과 관련 주목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문제는 평화협정 체결 자체를 논의하기 보다는 한반도의 평화체제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원용하여 이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남북간 상호논리의 상충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북한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하는 구도속에서 한·중의 정치·군사적 관계 강화와 북·미의 정치·군사적 관계 진전을 교차적으로 논의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⁴⁴⁾

이 밖에도 상호 비방·중상문제는 남북 상호간에 국내정치적 필요를 충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을 해소할 수 있는 자신감만 있다면 언제라도 실천할 수 있으며, 남북 군사직통전화 개설문제도

44) 북한의 대미 평화협정 체결 공세에 대한 대안으로는 「2+1」, 「2+2」, 「2+4」, 「2+유엔참전국」 등 다양한 방안이 있는데, 최근 한국정부가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금년 8월 15일 가칭 「한반도 평화안」 속에서 「2+2」방식을 현실적인 대응책으로 북한에 제의할 것으로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중앙일보」, 1995.7.15.

오히려 남북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을 때 그 필요성 또한 제고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어느 시점에라도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사안이다.

나. 경제분야

남북한 경제협력의 목적은 통일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는 데 있다. 남북한 경제협력은 불가피하게 정치·군사문제와 연계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나 이 경우에는 남북한간의 불안정한 정치·군사적 상황에 따라 자주 중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호교류 확대를 통한 통일여건 조성에 기여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또한 그결과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낮추게 되어 주변국의 대북한정책 방향과 상충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도 지적되어 왔다.

이와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경제협력의 추진목적에 대한 인식의 재정립이 요구된다. 즉 대북경제협력은 북한경제를 일방적으로 도와주는 데 있다기 보다는 남북한 경제의 상호이익을 위한 목적에서 추진된다는 시각을 가져야 한다. 남한기업이 추진하는 경제협력의 목적은 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 자원과 남한의 자본과 기술의 결합으로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경제협력을 통하여 남한은 노동집약적 산업이나 부품산업의 대북이전을 통해 산업구조조정이 가능하며, 이를 통한 생산비 절감은 수출시장에 있어서 남한기업의 국제경쟁력 회

북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한편 북한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하여 그들이 역점을 두고 있는 경공업 발전과 수출산업의 육성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남북경제협력은 남북한 공동의 경제성장과 보완적 산업구조조정을 촉발하고 장기적 측면에서 통일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이질체제의 통합에 따르는 후유증 발생요인을 감소시켜 통일비용을 줄이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요컨대 남북경제교류·협력은 남한이 북한을 돕는다는 차원이 아니라 통일을 대비하여 남북한 경제의 산업구조를 경제공동체를 형성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는 측면에서 폭넓게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남북 경제협력이 정치·군사적 화해에 효율적인 기여를 하기 위해서도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이 높아야 하며 북한에게는 남한과 대체될 수 있는 경제협력의 파트너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 전제가 된다. 즉 남북상호간의 경제적 의존성이 높으면 높을수록, 남한을 대체할 수 있는 경쟁의 파트너가 적으면 적을수록 남북경제협력의 군사목적으로의 전환 가능성에 대한 견제효과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현실을 볼 때 남북한 경제의 상호의존성은 매우 낮으며, 북한경제는 그동안의 폐쇄적 자립노선에 의한 경제정책 추진으로 외부의 충격에 둔감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경제협력은 정치·군사적 화해를 위한 효율적인 수단이 될 수 없는 실정이다. 또한 대북경제협력을 효율적인 수단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대체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파트너가 없어야 하

는데 북한의 경우 중국 등 사회주의 우방국과 일본 등 남한을 대체할 수 있는 경제협력의 파트너가 존재한다. 특히 일본이 북한과의 경제협력에 보이는 적극성을 감안할 때, 한국의 대북경제협력의 부진은 일본기업의 대북진출의 여지만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남북경제교류·협력은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자 하는 우리의 통일정책 구도하에서 추진하되, 민간기업의 자율성의 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북한이 남북경제관계에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⁴⁵⁾ 경제특구를 통한 제한적 개방을 시행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현 단계에서는 위탁가공교역의 확대, 남한민간기업의 적극적인 특구진출을 추진하는 것이 북한의 개방을 확대시키는 차원에서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경수로 지원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많은 난제 등을 생각할 때 남북경제교류·협력은 시행과정에서 우여곡절을 겪게 될 것이다. 그리고 북한측의 이중적인 태도, 즉 외형적인 거부와 내면적인 호응은 경제교류의 추진을 통하여 통일의 여건을 조성하려는 한국정부의 참된 의지를 왜곡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45) 예를 들어 1994년 11월 8일 남한정부가 핵-경협연계 완화조치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남북경제협력 활성화 조치」를 발표하였을 때 북한당국은 공식적으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에, 이성록 고려민족산업발전협회 회장과 김정우 대외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이 북경에서 남한의 민간기업과의 접촉을 통하여 적극적인 대북투자를 요청하였다.

다. 대외관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책에 대한 주변국의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대북 경수로지원 사업에서의 「한국형 원자로」와 「한국의 중심적 역할」과 관련한 일련의 논의과정이 이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

평화적 통일을 구현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통일과정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즉 한반도에 전쟁의 위협을 제거하고 나아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연장선상에서 통일을 성취한다는 목표를 상정해야 한다. 물론 북한자체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국의 의지와 무관하게 북한내 불안이 고조되고 통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적어도 김일성 사후 상당기간 북한정권이 안정을 유지하고 정상적인 남북대화 재개 및 대서방관계를 개선하는 것이 한반도안정에 기여할 수 있다.⁴⁶⁾

남북관계의 실질적 진전이 북한체제의 변화에 따라 가능해진다고 할 때, 한국의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은 우선적으로 북한의 개방·개혁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서방세계의 대북관계 또한 이러한 방향성을 갖고 전개되도록 유도해야 한다.

둘째, 북한의 개방·개혁을 위한 조치로서 국제사회에서 북한과의 인적, 물적교류를 확대하고 경제부분의 협력을 모색해야 한다.

47) 그러나 북한이 불가피한 경제개방이라고 할지라도 체제유지에

46) 길정우, “통일을 위한 실질적 대비방안: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한 정책추진 방향,” pp. 170~174.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정도의 대외개방을 추진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을 것이므로, 적어도 초기단계에는 북한의 선택에 의한 특정부분의 개방을 수용하고 북한이 점진적으로 시장경제체제의 논리에 익숙해지도록 유도해 가야 할 것이다. 국제사회에 북한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경제관련 국제기구에 북한의 참여를 지원하고 해외차관 추진시 지불보증을 공여하는 등 제도적 틀안에 북한을 귀속시킴으로써 북한지도부의 정책결정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물론 북한이 경제개방과정에서 서방국의 참여가 보장되는 한 남한기업과 정부의 간여의 폭을 가급적 제한할 것이지만 경제발전 추진과정에서 북한 스스로 남한과의 교류·협력이 불가피하며 오히려 상당한 이익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도록 시간을 갖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통일과정에서 한국의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홍보해야 한다. 북한체제의 장래가 불투명하다고 하더라도 한국이 북한의 변화방향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면서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의 공식적 통일방안과 정책기조인 단계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에 충실한 정책을 구사함으로써 국제사회의 신뢰를 확보하고 남북관계에서도 신뢰를 구축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보다 구체적인 주요 현안으로, 첫째 대북 경수로 지원문제를 들

47) 박영호·오재완, 「국제사회에서의 남북한간 협력방안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02~140 참조.

수 있다. 이 문제에서는 그동안과 마찬가지로 국제적 공조체제 유지가 필수불가결하지만 남북당사자간에 논의·해결할 사안들에 관해서는 한국정부의 분명한 입장을 천명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대한 주변국의 자의적 간여의 폭을 제한하고 남북간 논의의 영역을 확대하는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둘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문제이다. 북한은 정전기구를 무실화시키는 일련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을 배제한 채 향후 한반도에서 유엔사 해체, 미군철수 논의 분위기 조성, 한·미안보동맹관계 와해를 기도하고 있다.

「기본합의서」는 “남북한은 정전상태를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며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제5조)고 명시하고 있으며, 상호 불가침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발전시켜 한반도에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남북간 정치·군사적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평화체제와 관련 남북간 합의가 도출되기는 커녕 남북간에 단기간내 만족할만한 수준의 신뢰구축이 어렵다고 할 때, 남북한 각각의 군사동맹국인 미국과 중국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즉 남북한 당사자간의 평화협정 체결을 전제로 한중 기본관계조약(불가침 포함)과 북·미 불가침협정의 교차체결을 순차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남북한 평화체제의 국제적 보장장치를 구축하는 것이다.⁴⁸⁾ 그러나 어떠한 문서화된 약속이라고 할지라도 남북간에 실질적인 군사적 신뢰구축이 병행되지 않는

경우, 실질적인 효과를 발휘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북한을 국제사회로 유도하여 남북한이 공동으로 민족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반조치는 한반도에 평화와 안정을 정착시키고 평화적 통일의 주변환경을 조성하는 작업과 일치한다. 한반도의 안정이 분단해소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인지, 혹은 분단의 고착화를 의미하게 될지는 상당부분 남북한 자신의 의지에 달려있다. 주변국이 한반도 통일을 지원할 것인가의 여부는 변화하는 국제정세속에서 이들 각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결정될 것이며,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주도적 노력으로 그 방향이 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VI. 맺음말: 우리의 준비과제

21세기 시대의 특성은 아직 확실하고 분명하게 수립된 것이 아니지만 전세계와 인류는 이미 냉전 대신에 자유·복지와 개방화의 길을 걷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 한민족은 일제아래서 또 해방 이후 50년 동안에 혹독한 시련과 용기있는 도전으로서 오늘날의 한민족으로 굳세게 생존·성장·발전되어왔다. 이에 대해서 우

48) 현실적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보장을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간의 합의에 기초하여 남북한과 주변국간의 「2+2」회의 또는 「2+4」회의를 통한 방안, 남북간 기본합의서를 확대 발전시켜 불가침조약화하고 이를 유엔에 기탁하여 국제적으로 보장받는 방안, 남북한과 미국과 중국이 우선적으로 교차불가침협정을 체결하고 이를 유엔에 기탁하는 방안 등이 고려될 수 있다.

리는 새삼스럽게 큰 민족적 자긍심과 그 무한한 잠재력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광복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들의 민족적 자긍심과 잠재력을 바탕으로 새로운 세계질서체제에 대응하고 적용하는 힘과, 민족공동체 완성에로의 의지를 가다듬는 것은 단지 우리나라의 생존과 보전·발전뿐만 아니라 21세기 태평양 번영시대의 주역으로서 한민족이 공헌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역사적 시기에서 남북관계의 현실은 국력격차가 심화⁴⁹⁾되고 있는 한편, 북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한계에 비추어 볼 때, 북한의 체제변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성급한 통일사업의 추진이나 통일에 대한 기대의 확산보다는 중장기적 시각에서 평화적인 통일을 준비하는 작업이 오히려 중요하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점진적이고 기능주의적인 통일정책을 견지하되, 통일 그 자체보다는 남북관계 개선을 중시하는 전략적 신축성을 보일 필요가 있다. 이것이 바로 「민족공동발전계획」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남북화해·협력을 「남북연합」으로 연결시키고 나아가 민족통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통합 대비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자유민주주의체제의 우월성을 고양시켜 민족통일의 미래상을 한국 내부에서부터 구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

49) 예를 들어 남북한의 경제력을 GNP로 비교할 경우 1993년 현재 남한이 3,287억달러인데 반해 북한이 205억달러로 추정됨으로써 남한이 북한에 비해 16배에 달하는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행, 「1993년 북한 GNP 추정결과」, (1994).

해서는 첫째, 정치분야에서는 남한체제의 대북한 비교우위가 월등이 높아질 때 북한의 대화·교류·협력 자세가 근본적으로 전환될 것이므로 정치적 안정속에서 민주발전을 지속해야 한다. 지속적인 민주화 추진을 통한 민주적 정치문화의 형성, 자유민주주의의 이념의 기본가치 확립을 통한 안정된 정치체제의 구축, 「남북연합단계」 이후를 고려하여 정치권의 체질 강화 및 이념과 사상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려는 노력, 그리고 통일의 미래상이 구현되는 정치체도의 강구 등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분야에서는 경제의 재도약을 통해 발전을 지속하여 국력신장을 도모함으로써 북한의 대남적화혁명전략 조기 포기 및 북한의 개방을 유도할 수 있는 물리적 힘을 축적하는 동시에, 통일 이후 북한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경제력을 배양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형평성있는 부의 배분 실현을 통한 복지사회 구현, 통일 이후 실업문제, 경제인구이동 등 경제적 부담 축소를 위한 통일기금의 확충, 통일을 대비한 사회간접시설의 확충, 그리고 남북 경제통합에 대비한 남북한 산업구조 조정계획의 사전수립 등이 시행되어야 한다.

셋째, 사회분야에서는 북한주민이 남한의 사회체제를 선호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정의사회를 구현하여 도덕적인 우월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또한 지역갈등 및 계층갈등을 해소, 공동체의식의 함양 및 국민화합의 달성, 사회복지의 확충, 그리고 선진사회 및 민족통합에 부합하도록 도덕성을 회복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국방분야에서는 북한의 대남 무력도발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한 군사력을 유지하는 방향에서 군현대화계획을 추진하되, 궁극적으로 통일 이후를 고려한 장기적인 군사력 유지와 군사전략을 수립한다. 한·미 군사관계의 효율적인 운용을 강구하고, 남북 공존에 대비하여 적정한 규모로의 군비축소를 추진한다.

다섯째, 통일문제는 특정 개인이나 계층, 정당, 그리고 집단의 이해관계를 초월한 민족적 과제이다. 따라서 통일정책은 초당적이며 범국민적인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민족공동체 형성이 추진될 경우에 '자연스럽고 바람직한' 통일을 이룩할 수 있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은 「기본합의서」의 정신을 구현함으로써 민족공동체를 완성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광복 50주년의 역사적 시점을 근대적 민족국가의 완성이로 전환시키기 위한 실천적 행위인 것이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방안

朴淳成

(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목 차 >

- I. 머리말
- II. 남북경제관계와 「민족발전공동계획」
- III. 경제분야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기본틀
- IV. 세부 추진 전략
- V. 맺음말

I. 머리말

대통령의 1994년 8·15경축사에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함께 제시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경제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자연스런 통일, 바람직한 통일’¹⁾을

1) “통일은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 남북이 협력 속에 경제적 번영을 이룩하여, 하나의 경제공동체가 형성될 때, 자연스런 통일, 바람직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김영삼 대통령 광복 49주년 기념식 경축사 (’94.8.15),”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0호 (서울: 통일원,

이루어 내려는 우리 정부의 의지와 정책방향을 구체적으로 표명한 제안이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체성은 그 첫 사업으로서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 에너지의 개발에 남한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 데에서 잘 나타난다.²⁾

남북관계의 현 상황에서 보았을 때, 「민족발전공동계획」은 현실성을 구비하고 있다. 1995년 6월 13일 북·미협상의 결과 「미·북한 공동 언론발표문」의 형태로 확정된 대북 경수로 지원사업의 기본 골격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이 확보됨에 따라,³⁾ 우리 정부가 제안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지난 7월 남북 쌀회담을 통해 성사된 대북한 쌀 지원은 남북 민간차원의 경제적 관계가 점차 당국 간 공식적 차원에서의 경제협력으로 발전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⁴⁾ 경수로 지원 사업을 통하여 출발점이 마련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현실성과 확대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1994), pp. 119, 122.

2) “우리는 북한이 핵 활동의 투명성을 보장한다면, 북한의 경수로 건설을 비롯한 평화적 핵 에너지의 개발에 우리의 자본과 기술을 지원할 용의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공동체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민족발전 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0호, p. 123.

3)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2호 제4장 참조.

4) 제2차 남북 쌀회담(북경, 1995.7.15~19)에서 남북경협이 의제로 오르긴 했으나 남북간에 합의가 도출되지 못하였다. 제3차 쌀회담(북경, 1995.8.10~)에서도 남북경협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경수로 지원 사업을 포함한 경제분야에서의 「민족발전공동계획」을 보다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새로운 계기가 마련된 남북한간의 경제적 교류·협력이 경제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실천방안은 우선 통일정책의 근간이 되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기본 구도에 적합한 방식으로 정책목표, 정책방향, 단계별 전략, 세부 사업의 추진계획 등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남북한의 합의와 협력에 기초해야 할 ‘공동계획’의 성격을 지닌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남북한간에 협의·채택된 「남북기본합의서」 및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기본 방향과 내용을 참조하고, 그 틀 안에서 남북합의를 실천·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민족발전공동계획」이 구상되어야 한다.⁵⁾ 특히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서 경제분야와 관련하여 제시된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방향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우리 정부가 제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실현과 남북간에 합의된 「남북기본합의서」의 실천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민족발전공동계획」은 통일한국의 민족경제와 관련해서도 중

5) 이 점은 작년의 '8·15 경축사'에서도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남북기본 합의서와 ‘한반도 비핵화공동선언’은 남과 북이 세계와 민족 앞에 그 실천을 약속한 화해와 협력의 대장전입니다.”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0호, p. 122.

요한 의미를 갖는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을 통하여 형상화될 경제공동체는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 하나의 민족경제를 형성하는 것에 머무를 수 없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은 통일과정 및 통일한국에서 우리 민족의 경제공동체가 선진경제로 발전하고⁶⁾ 세계경제질서 속에서 '개방적 민족경제'로서 동북아 지역경제 및 세계경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민족경제발전을 위한 중·장기적인 구상을 마련하여야 한다.⁷⁾ 결국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민족발전을 위한 남북한 양국간의 협력과 함께 동북아 경제질서 및 국제경제질서에서의 다국간 협력을 동시에 고려한 구상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과정은 지구화라는 세계경제의 변화 추세 속에서 우리 민족의 경제공동체가 '자주적'으로 통일을 달성하는 주체가 되고⁸⁾ 나아가 통일이 민족발전의 계기가 되는 역사적 통일

6) 통일에 도달하기 위한 정책적 방법으로 제시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북경제의 발전을 통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통일을 달성한다는 뜻에서, 통일이라는 개념에 발전이라는 개념이 접합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다. 통일과정은 곧 민족발전과정으로, 통일은 민족발전과정에서 하나의 계기로서 인식되는 것이다.

7) "통일은 결코 민족공동체의 선진국 진입에 장애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보완·발전시키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통일원 남북회담사무국, 「남북대화」, 제60호, p. 122. 통일한국의 경제를 '개방적 민족경제'의 건설과 연관시키고 있는 논의로는 김대환, "통일경제체제와 국가의 역할," 한겨레신문사·학술단체협의회, 「한반도 통일국가의 체제구상 3차 경제부문」(해방 50주년 기념 학술대회, 1995.7.8) 참조.

8) 「7·4남북공동성명」에 의하여 정립된 조국통일원칙의 제1항은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韓國國際文化協會, 「南北對話」, 제1호 (서울: 한국국제문화협회, 1973) 참조.

과정으로서 자리잡게 될 것이다.

이상의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논문은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경제분야를 중심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남북경제관계에 대한 역사적 개관을 기초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올바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의미를 개념적으로 구분하고 정의한다. 제3장에서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기본틀을 이룰 정책 목표, 정책방향, 단계별 전략을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및 경제공동체 형성과 관련시켜 설정한다. 제4장에서는 「민족발전공동계획」 세부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정책적 고려사항 및 추진전략을 살펴본다. 결론에 해당하는 제5장에서는 「민족발전공동계획」 및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의의를 통일과정으로서의 남북관계 현실에 놓고 검토할 것이다.

II. 남북경제관계와 「민족발전공동계획」

남북한간의 군사적 적대와 정치적 대립은 40여년 동안 최소한의 경제적 교류조차도 차단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단절의 시기에도 경제교류·협력을 위한 남북한 양 정부의 노력은 이상적 제안, 정치적 회담, 경제회담 등의 형식과 과정을 통해 꾸준히 표출되었다. 실질적인 경제교류는 1984년 북한의 수재물자 제공 제의를 남한이 받아들임으로써 시작되었으며, 1988년

「7·7 특별선언」 이후 남북경제교류를 허용하는 남한 정부의 조치가 취해짐으로써 교역분야를 중심으로 상당히 발전하였다. 특히 1991년 말 「남북기본합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남북관계는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초를 가지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남포공단에 대한 투자 및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에 대한 참여가 구체적으로 논의되기도 하였다. 1993년 이후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남북경제관계의 발전이 일시적으로 정체하였으나, 대북경수로 지원을 계기로 남북간의 경제교류·협력이 다시 본격화될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남북경제관계 발전과정에서 보았을 때, 「민족발전공동계획」은 경제교류·협력의 한 형태로 인식된다. 특히,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경수로 지원 및 평화적 핵 에너지 개발이라는 형태로 제안되었다는 점에서 보면,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북경제협력을 개별 기업·사업의 차원에서 추진하려는 미시적 남북경제협력계획으로 규정될 수 있다. 미시적으로 개념 규정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북한경제를 경제특구 중심으로 발전시키고 남북한 경제를 산업별·지역별로 통합하려는 중범위 수준의 남북경제협력계획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경제분야 통일정책으로 이해될 때,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북한 경제체제와 경제운영원리를 통합하고 민족경제공동체를 한반도 전체에 걸쳐 발전시켜 나가는 ‘민족경제 차원에서의 거시적 경제통합·개발계획’으

로 규정될 수 있다. 결국 미시적 개념으로부터 거시적 개념으로 확장됨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의 한 형태 내지는 일부분으로 이해되던 「민족발전공동계획」은 경제공동체 형성이 라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장기목표에 따라 경제교류·협력을 포함한 남북경제관계발전 전반을 계획·추진하는 경제분야 통일정책의 기본틀로서 활용될 것이다.⁹⁾

1. 남북경제관계의 전개

가. 「7·4 남북공동성명」과 「남북조절위원회」: 1972~1973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남북경제관계에서 의미있는 변화는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으로부터 나타났다. 공동성명의 합의에 기초하여 구성·운영된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처음으로 남북간의 경제교류에 대한 구체적 제안들이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¹⁰⁾ 이를 위해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경제분과위원회를 두기로 합의하였다.¹¹⁾ 특히 「남북조절위원회」 제3차 회의(서울,

9) 거시적 「민족발전공동계획」을 새로운 세계경제질서 및 동북아 경제질서 속에 위치시킬 때,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동북아 경제공동체를 향한 민족경제의 기초를 형성하는 계획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10) “남북 사이의 경제, 문화적 및 사회적 교류와 힘을 합쳐 같이 사업하는 등의 문제를 협의, 결정하며 그의 실행을 보장한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2조 다항. 통일원, 「남북합의서」 (서울: 통일원, 1994), p. 105.

11) “남북조절위원회 안에 정치, 군사, 외교, 경제, 문화분과위원회를 둔다.

1973.6.12~14)에서 우리 정부는 경제분과위원회를 조속히 발족시키는 동시에 경제인의 교류, 물자의 교류, 과학기술의 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상품전시회의 교환 개최, 상사의 교환 상주 등을 포함한 경제적으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는 조치들을 실천에 옮길 것을 제안하였다.¹²⁾ 그러나 우리 정부의 이러한 제안들은 5개 분과위원회(정치·군사·경제·문화·외교)의 일괄 설치를 주장하는 북한 측의 주장과 엇갈려 실현되지 못하였다.¹³⁾

「남북조절위원회」를 통한 남북간 경제교류·협력의 돌파구 마련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지만, 이 시기 남북대화는 북한의 경제성장전략의 변화와 관련하여 점점될 필요가 있다. 대내적으로는 중공업중심의 불균형경제성장전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혁신이 요구되고, 대외적으로는 중·소갈등과 중·미, 중·일 관계의 진전에 따라 대외경제관계 개선의 필요성이 증대함으로써, 북한은 1970년대 초부터 서방으로부터 자본과 플랜트를 차관과 원조의 형식으로 들여오고 있었다. 자립적 민족경

각 분과위원회는 남북조절위원회 사업이 진척되는 데 따라 설치하며, 그 기능과 구성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규정한다.” 「남북조절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 제3조 다항.

12) 한국국제문화협회, 「남북대화」, 제1호, p. 23.

13) 경제·문화·사회분야에서의 광범위한 교류를 통하여 남북 사회를 상호간에 개방하자는 서울측 주장과 정치·군사분야에서의 상호불신을 먼저 해소하자는 평양측 주장으로 나타나는 남북관계에 대한 쌍방간 이해와 접근에서의 차이를 서울측 공동위원장은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다. 북한의 입장: 「총과 칼을 놓자, 총과 칼을 놓으면 상호의심은 서로 풀린다; 남한의 입장: 「서로 오해나 의심을 완전히 풀기만 하면, 총과 칼이라는 것을 놓지 말아라 해도 놓게 되어 있다.」 「남북대화」, 1호, pp. 33~34.

제건설노선에 변화를 가져온 개방전략은 충분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분명 북한으로 하여금 남북대화에 들어와 개방전략의 실현에 유리한 한반도 정세를 만들도록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¹⁴⁾

나. 「남북경제회담」 전후: 1984~1985

최초의 의미있는 일련의 남북간 접촉이 성과없이 끝난 이후, 1984년 11월에 이르러 남북 쌍방은 「남북경제회담」을 개최하게 되었다. 「남북경제회담」은 남한측의 남북한 교역·경제협력제의 및 물자·기술 무상 제공용의 표명(1984.8.20), 수재물자 인수(1984.9.29~30) 그리고 북한측의 서방제국과의 자본 및 기술 합작을 위한 「합영법」 발표(1984.9.8) 등의 상황적 조건 하에서, 남한이 「남북경제회담」을 제의(1984.10.12)하고 북한이 이를 수락(1984.10.16)함으로써 개최되었다.¹⁵⁾

「남북경제회담」은 1984년 11월부터 1985년 11월에 이르기까지 5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북간의 경제교류와 경제협력에 관한 광범위한 문제들이 논의되었다. 남북한이 경제교류·협력방안 및 경제협력기구(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14) 남북한의 경제교류·협력은 앞으로도 북한 내부의 경제적 상황 및 전략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또한 기본적으로 한반도 및 한반도 주변의 정치·군사·경제적 상황 및 남북한의 세력관계에 영향을 받으며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다.

15) 남북회담사무국, 「남북 경제회담 핸드북」 (서울: 통일원, 1993), pp. 7~8.

관하여 제4차 회의에서 각각 제시한 포괄적 합의서를 기준으로 남북한의 주장을 검토함으로써, 경제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접근방식에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도록 하자.

경제교류·협력의 기본원칙과 관련하여, 표현에서의 차이는 있지만, 남북한은 물자교류·경제협력이 민족번영과 평화통일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점에 있어서 공감대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교류·협력의 선후문제에 있어서 남한은 순수 경제적 차원에서 선교류·후협력을 제시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선협력·후교류를 원칙으로 제시하면서 협력과 교류의 동시 실현도 무방하다고 주장하였다. 남한의 기능적·점진적·단계적 접근과 북한의 일괄적·포괄적 접근 사이의 차이는 시장경제체제의 우위성과 파급성에 대한 신념에 기초하여 통일문제를 바라보는 남한과 분단과 통일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념적·정치적·군사적 적대관계의 관점에서부터 파악하는 북한의 입장차이로부터 파생되어 나왔다. 이러한 입장의 차이는 남한이 경제교류·협력사업에 관한 구체적 협의를 중시하고, 북한이 경제공동위원회¹⁶⁾의 구성을 우선시하는 데에서도 나타난다.¹⁷⁾

16) 경제공동위원회의 명칭으로서, 남한은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를, 북한은 「북남경제협조공동위원회」를 제시하였다. 이후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에 따라 경제공동위원회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라는 명칭으로 확정되었다.

17) 교류·협력에 관한 남북한의 입장차이는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비교해 볼 수도 있다. 남한과 북한의 입장차이를 제도론적 관점에서 해소하려는 이론적 노력으로는 박순성,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 제도론적 통일론의 시각에서,” 「사회과학논총」, 제7집(성신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95),

물자교역 방안과 관련하여 남북한은 많은 점에서 의견의 일치와 접근을 이룰 수 있었다. 남북한은 교류물자의 가격을 국제시장 가격 기준으로 교류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결정하며, 스위스 프랑을 결제통화로 사용한다는 데 의견일치를 보았다. 또한 거래방식은 기본적으로 청산결제방식을 활용하며, 결제업무는 남과 북의 은행이 담당하며, 관세는 면제하며, 통관·검사·사고처리는 대외거래 규정을 준용하며, 수송수단은 철도·선박·자동차를 통한 남북한의 직통거래를 활용한다는 점 등에서 의견의 접근이 이루어졌다. 교역품목 및 교역량과 관련하여 차이점이 부분적으로 노출되었으나, 실제적인 물자교역이 이루어지는 데 어려움을 야기할 정도는 아니었다.

경제협력 방안과 관련하여 남북한은 협력사업의 대상에 있어서는 의견의 접근을 보였으나, 나머지 부분에서는 상당한 정도의 입장차이를 나타내었다. 대상과 관련하여, 남북한은 공통적으로 자연자원의 공동개발·이용을 제안하였으며, 남한은 추가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의 설정을 제안하였다.¹⁸⁾ 경제협력의 방

2장 2절 참조

18)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남북한 각각의 제안은 일정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남한의 경우, 이미 1973년 제3차 「남북조절위원회」에서 자원의 공동개발을 제안하였으며, 1982년 국토통일원장관의 20개항 「대북시범실천사업 제의」에서 공동어로 구역 설정을 제안하였다. 한국국제문화협회, 「남북대화」, 제28호(1982), p. 85. 북한이 남북 어장·어항의 개방과 공동이용을 포함한 남북 경제교류의 방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건으로는 1960년 11월 22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2기 제8차 회의에서 채택된 “남북조선의 경제·문화교류의 협조를 실현하며 남조선에서 민족경제의 자립적 발전을 도모할데 대한 의견서”가 있다. 국토통

법, 규모, 협력사업 조건 및 문제처리 등과 관련하여, 남한은 경제협력사업 당사자간의 협의를 원칙으로 내세웠으나, 북한은 공동위에서 결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조세 및 사용료, 소요물자의 조달 등에서 남북한은 일정한 의견차이를 보였다.

「남북경제회담」은 1986년 1월 22일로 예정된 제6차 회의가 북한에 의해 취소됨으로써,¹⁹⁾ 더 이상의 진전이 없었다. 그러나 제5차 회의까지 제시된 남북한의 입장을 비교하면, 남북한간의 물자교류는 실제적으로 성사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에 대한 남북한의 입장은 많은 차이점을 보였으나, 당시 「합영법」을 제정하고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자본과 기술을 도입하려는 북한의 의도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제협력의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았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정치·군사적으로 상호적대와 불신의 관계를 지속해 온 남북관계에서 바라보면, 경제회담을 통하여 일순간에 남북한의 물자교류와 경제협력의 돌파구가 마련된다고 믿는 것은 비현실적일 수밖에 없었다.

다. 「7·7 특별선언」 이후: 1988~

일원, 「최고인민회의자료집, 제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 649~793.

19) 「남북경제회담」 중단에 대하여는 국토통일원 남북대화사무국, 「남북대화」, 제40호 (서울: 국토통일원, 1986)를 참조.

남북한 경제교류·협력의 새로운 계기는 1988년 우리 정부의 남북물자교역을 허용하는 「7·7 특별선언」²⁰⁾과 후속조치²¹⁾에 의해 마련되었다. 남북간의 교역은 이후 조금씩 이루어지기 시작하다가, 남북고위급회담이 본격적 단계에 접어들던 1991년에 들어 급속히 확대되었다. 북한의 핵문제가 돌출한 1993년에 들어 남북교역은 일시적으로 주춤거렸으나, 1994년부터 다시 확대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94년에는 위탁가공교역의 형태가 남북교역에서 새로운 가능성으로서 증대하기 시작하였다.²²⁾ 남북교역은 북한으로부터 남한으로의 반입이 거의 90%에 달하고, 교역품목이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남북교역의 총거래액이 북한 총무역액의 10.8%에 달하고, 특히 남한으로의 반입이 북한 수출액의 24.2%에 달하고 있다(1994년)는 점에서 보았을 때,²³⁾ 북한경제에서 차지하는 남북교역의

20) “남북간 교역의 문호를 개방하고 남북간 교역을 민족내부 교역으로 간주한다.”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을 위한 ‘7·7 특별선언,’” 통일원, 『통일백서 1992』 (서울: 통일원, 1992), p. 420.

21) 후속조치로는 「남북물자교류 지침」(1988.10.7),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1990.8.1) 및 「시행령」(1990.8.9), 「시행규칙」(1990.11.9) 그리고 「남북협력기금법」(1990.8.1) 및 「시행령」(1990.12.31), 「시행규칙」(1991.3.27) 등이 있다.

22) 반출입 승인현황을 보면, '88년 1,037천\$, '89년 22,304천\$, '90년 25,085천\$, '91년 192,172천\$, '92년 213,503천\$, '93년 198,790천\$, '94년 228,944천\$이다. 통관현황으로 보면, 89'년 18,724천\$, '90년 13,465천\$, '91년 111,269천\$, '92년 173,426천\$, '93년 186,591천\$, '94년 194,546천\$이다. 위탁가공교역의 승인현황은 '91년 36천\$, '92년 969천\$, '93년 7,996천\$, '94년 28,564천\$이다. 통일원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 46호 (서울: 통일원, 1995).

23) 한국은행, “1994年 北韓 GNP 推定結果,” (서울: 한국은행, 1995); 통일원

의미는 매우 크다.²⁴⁾

경제분야 남북교류의 확대는 남북 주민간 접촉에서 관광·교통을 포함한 경제부문 관련 접촉이 꾸준히 증대하고 있다는 사실에도 잘 반영되어 나타난다. 특히 이러한 접촉을 통하여 남한 기업의 대북한 직접투자를 포함한 남북간 경제협력사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었고,²⁵⁾ 나아가 북한의 지역중심 개방전략²⁶⁾에 남한의 기업이 단독으로 혹은 국제기구를 매개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었다. 실제 1991년 이후에는 유엔개발계획(UNDP)이 동북아 지역 경제개발의 최우선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북한이 내부적으로 자유경제무역지대라는 특수지위를 부여(1991.12.28)하고 추진하는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 등에 남한이 참여하려는 시도를 보임으로써, 남북경제협력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단계에 이르렀다.

물자교류와 경제인 교류의 실질적 활성화는 당시 「남북기본합의서」를 협의·채택하기 위하여 추진되고 있던 남북고위급회담의 순조로운 진행과 맞물려 있었다. 남북고위급회담은 1990

교류협력국,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46호 (1995.4.1~4.30) 참조.

24) 남북교역의 문제점, 성격 및 의미에 대한 분석은 이상만,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課題,” 「統一問題研究」, 제5권 1호 (서울: 통일원, 1993); 박순성, “남북 경제교류협력과 북한의 변화전망,” 「통일」, 160호 (서울: 민족통일중앙협의회, 1995) 참조.

25) 대표적 사례로 1989년 (주)현대의 금강산공동개발사업 협의, 1992년 (주)대우의 남포공단에 대한 투자방문·상담을 들 수 있다.

26) 북한의 개방전략에 지역개념이 도입된 것에 대하여는 동용승·서양원, 「남북경협 이렇게 풀자」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1995), pp. 18~19 참조.

년 9월에 시작하여 1992년 9월에 이르기까지 8차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남북기본합의서」 및 기타 「부속합의서」 등 앞으로 남북관계를 규정할 중요한 문서들을 합의해 내었다. 또한 1992년에 이르러서는 남북교류·협력분과위원회를 비롯한 3개의 분과위원회 회의가 수 차례에 걸쳐 개최되었으며,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를 포함한 4개의 공동위원회의 구성이 합의되었다. 남북경제관계, 특히 「민족발전공동계획」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참조문서로 기능할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가 1992년 9월 17일 채택되었다.

경제교류·협력의 대상 및 방법과 관련한 남북간의 합의내용은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의 제1장에 나타나 있다. 「부속합의서」에 의하면, 경제교류·협력의 분야는 ①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자원의 공동개발 및 합작투자 등의 경제협력사업, ②과학·기술·환경 분야에서의 교류와 협력, ③철도·도로의 연결, 해로·항로의 개설, ④우편·전기통신교류, ⑤국제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및 대외 공동 진출 등 다섯 가지로 대별된다.²⁷⁾

27) 물자교류 및 경제협력사업과 관련한 조항에서 남북은 경제협력사업의 대상·형식, 물자교류에서의 품목·규모 등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에서의 품목별 수량 및 거래조건 등 실무적 문제는 교류·협력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맡기기로 합의하였다. 그 외 교류·협력 당사자의 조건(법인 및 개인), 계약 형태(당사자간 직접계약 원칙), 교류물자 가격(국제가격 기준, 당사자 협의), 대금결제 방식(청산결제방식 원칙, 당사자 협의), 관세(무관세 및 민족내부거래 원칙) 등에 관하여는 「남북경제회담」(1984.11~

1990년대부터 발전하기 시작한 남북교역 및 경제인교류, 그리고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1993년 봄부터 북한 핵문제로 인하여 경색되기 시작하였다.²⁸⁾ 그러나, 남북관계의 전반적 경색에도 불구하고, 남북한간의 교역은 경제논리에 의해 뒷받침된 내적 추동력에 의하여 지속되어 왔다. 1995년에 들어 북한의 핵문제가 대북 경수로 지원을 고리로 풀려 나감에 따라, 1995년 5월말 현재 남북교역은 작년 동기에 비하여 승인기준으로 69.3%, 통관기준으로 52.7% 증가하였다.²⁹⁾ 또한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1994.11.8)가 취해짐으로써, 남한 기업인들은 1994년 말부터 북한을 방문하여 본격적으로 경제협력사업을 논의하기 시작하였다.³⁰⁾ 뿐만 아니라, 대북 쌀 지원을 협의하기 위한 회담에서 남북경협을 논의할 전망이며, 경수로 지원과 관련하여 남한의 기술자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므로, 남북경제관계는 발전을 위한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³¹⁾

1985.11) 과정에서 의견일치를 보았던 것이 그대로 합의되었다. 이 점에서 남북관계는 외형적 불안정성에도 불구하고,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록 참조.

28) 북한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경색과정에 대하여는 길정우 외,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전개과정 및 발전전망」,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29) 통일원, 「월간 남북교류협력 동향」, 제47호, pp. 6~19.

30) 방북 기업들(쌍용, 신원, 삼성, 대우, 한화, 대동화학, 영신무역 등)이 구체적으로 협의한 사업 내용은 시멘트합작사업, 컨벤션센터설립, 섬유공장설립, 기간시설건설, 통신시설설치, 신발위탁가공 등이다.

31) 현재까지의 남북경제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남북경

2.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의미

가. 미시적 개념

현재까지 물자교류를 중심으로 한 남북교역, 경제협력사업을 위한 협상 및 경제분야 남북 당국간 회담 등의 형태로 발전되어 온 남북경제관계 전개과정에서 바라보았을 때, 우리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은 경제교류·협력의 한 방식으로 이해될 수 있다. 특히,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 사업이 경수로 지원 및 평화적 핵 에너지 개발이라는 형태로 우리 정부에 의해 제안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족발전공동계획」은 자원의 공동개발 내지는 에너지 분야에서의 합작투자 등을 몇몇 개별 기업이 구체적 단일 사업에서 실천해 가는 경제협력계획으로 규정되어야 한다. 이처럼 개별적·미시적 관점에서 바라본 남북경제협력계획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협의의 개념으로 규정할 수 있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을 협의로 해석할 경우, 정책입안자와 계획참여자는 계획의 수립·추진과정에서 사업을 구체적으로 선정

제관계의 발전과정이 북한의 경제성장전략의 변화(특히 개방전략)와 밀려 있다는 사실이다. 1972년도부터 열린 남북관계는 당시 북한의 제1차 개방전략과, 1984년도부터 개최된 「남북경제회담」은 합영법으로 나타나는 북한의 제2차 개방전략과, 1990년대 초부터의 남북경제관계의 발전은 지역개념을 도입한 북한의 제3차 개방전략과 연결되어 있었다.

하고 사업의 세부계획을 명확하게 세울 수 있으며, 이에 기초하여 계획된 사업을 북한측 담당자와 좀더 효율적으로 논의할 수 있다. 물론 협력사업의 선정 및 세부사업계획의 수립과정에서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사업종류와 계획방향을 사전에 파악하여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북한이 제시하는 사업목록³²⁾을 참조하여 북한이 수용할 수 있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제안한다면 몇 차례의 상담을 통하여 사업의 구체적 실천방안 및 계약조건에 대한 논의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개별적 경제협력사업에서의 성공적 사례들의 축적을 통하여 남북한 협력당사자들은 상호간의 신뢰를 쌓는 동시에 경제행위에서의 남북한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발견하는 교육적 경험을 갖게 될 것이다. 사실 개별 남북경제협력사업의 성공적 실현은 경제공동체 발전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물적·인적 자원의 확보에 필요불가결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협의로 해석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현재 발전단계에 있는 남북간 물자교류를 확대하는 데 필요한 제반 사회·경제적 기반을 확충하는 사업을 포함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남북간 물자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물자교류에서의 불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물자·정보교류센타를 판문점 부근에

32) 북한은 이미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및 금강산관광개발과 관련하여 투자안내서를 발간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외경제협력촉진위원회, 「황금의 삼각주: 라진-선봉 투자대상 안내」(1993); 금강산 국제그룹, 「금강산 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보고서」(1993) 참조.

설치하거나 남북간 육상·해상 직통 연결망을 형성하는 사업을 개별적 공동사업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협의의 「민족발전공동계획」은 이러한 사업까지를 자신의 범주에 추가적으로 포함시켜야 할 것이다.

협의로 해석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개별 경제협력사업들을 상호연계시키고, 경제협력사업을 광범위한 남북경제관계 발전 전략 및 「경제공동체」 형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포괄적 계획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민족발전공동계획」에 대한 협의의 해석을 벗어나는 다른 개념들이 요구된다.

나. 중범위 개념

협의로 제한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개별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북한이 도입·추진하고 있는 지역개방·개발 전략과의 연관하에 발전될 수 있다. 북한은 현재 나진-선봉지역, 금강산지역, 남포공단 등을 중심으로 자신의 경제체제를 부분 개방하는 동시에, 이 지역의 경제발전에서 북한 국민경제 차원에서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을 끌어내려고 한다. 따라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북한이 추진하는 지역단위 경제성장 전략에 상응하는 경제협력사업을 모색함으로써, 비교적 용이하게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지역경제를 기본 개념으로 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기본적으로 북한의 지역투자계획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북한의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의 추진전략과 추진과정을 보면, 지역개발이 북한의 국민경제와 단절된 방식을 띠고 있다. 나진-선봉지역은 근본적으로 북한경제와 단절된 지역이며, 노동가능인구가 충분하지 못하다.³³⁾ 덧붙여, 북한은 나진-선봉지역을 봉쇄하고 주민을 이주시키고 군병력을 파견하는 등, 나진-선봉지역을 통하여 들어올 자본주의적 경제원리와 사회·문화적 영향을 다른 지역으로부터 차단하려고 하고 있다. 따라서, 지역개념에 기초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일차적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라고 불리는 북한의 제한·폐쇄된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경제협력사업을 벌여야겠지만, 점차적으로는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를 주변의 지역경제, 추가 설정될 타 자유경제무역지대의 경제 및 북한의 국민경제와 유기적으로 연결시키는 전략을 강구·실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북한지역의 전체적 경제성장전략과 연계되면서, 북한지역 경제력 회복과 경제성장을 구상하고 실천하는 청사진으로서 북한지역 경제개발계획의 기본적인 구도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이 지역경제를 중심으로 추진될 경우,

33)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하여는 최수영,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統一研究論叢』, 제3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79~80 참조.

「민족발전공동계획」이 가져야 할 경제계획으로서의 주요한 특징은 지역단위의 경제를 일정 수준까지 내생적 자금능력을 가진 경제단위로 완결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지역내 사회간접자본을 개발·확충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지역내 경제활동들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일 수 있는 총괄적 지역발전계획이 필요하게 된다. 나아가, 개별단위 수준의 경제협력사업과는 달리 지역발전계획에 의거한 경제협력사업은 다수의 경제활동 단위들을 계획참여자로 포함하게 될 것이므로, 각 단위들이 개별 사업을 계획·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나게 될 마찰들을 원활하게 조정할 총괄조정자가 필요하다. 특히 북한의 경우 에너지·수송수단·공업용수 등을 포함한 사회간접자본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므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할 수 있는 총괄계획을 세우고 총괄계획에 따라 각 경제단위가 개별사업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자문·조정하는 총괄조정자가 반드시 필요하다.³⁴⁾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민족발전공동계획」은 총괄조정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주체를 남북한이 공동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북한의 경제특구에는 남한의 기업만이 자본·기술·인력을 가지고 들어가지는 않을 것이다. 나진-선봉지대 개발계획은 유엔개발계획이 계획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과 연관되어 있으므로,

34) 현재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을 담당하는 북한의 기구조직도는 대외경제위원회 -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 대외경제협력총국 - 나진-선봉지도국(조선경제개발총회사)으로 되어 있다. 「조선일보」, 1995.6.21.

계획의 추진과정에서 다수의 국가 및 자본(일국적·다국적·초국적)이 참여하고 또한 국제기구가 관여할 것이다. 따라서 북한 내 경제특구를 중심으로 추진될 중범위 수준의 「민족발전공동계획」은 필연적으로 동북아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개발계획을 염두에 두고 추진되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남한과 북한은 민족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³⁵⁾

지역적 의미에서의 공동개발계획과는 다른 측면에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을 확대할 수 있다. 이는 개별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이 협력하여 산업발전을 도모하는 것이다. 이 경우 우리 정부에 의해 제안된 평화적 핵 에너지 개발과 같은 경제협력사업은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남북한의 에너지 산업을 유기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한이 에너지 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형태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러한 형태의 산업분야별(에너지, 석탄, 철강, 곡물 등) 공동개발계획은 남북한 산업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이고, 나아가 남북경제공동체 형성의 물적 기반이 될 부문별 통합의

35) 우리 정부는 1992년 제1차 계획관리위원회(PMC)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 이후 적극적으로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 참여하고 있다.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에 대하여는 김규륜, 「두만강지역개발계획 발전방향」(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제성호, 「두만강지역개발계획의 현황과 전망: 개발대안 및 법제도 중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김학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대한 논의와 전망」(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참조.

출발점이 될 수 있다.³⁶⁾ 이와 같은 산업분야별 「민족발전공동계획」은 지금까지의 남북관계에서 볼 때 남북한간에 이미 구성·운영이 합의된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각 산업별 공동위원회가 구성·운영되어 계획의 구상·실천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지역개념 및 산업개념에 기초한 중범위 수준의 「민족발전공동계획」이 동북아지역의 경제권과 연결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게 된다면, 이 과정은 반드시 남북한 지역경제의 유기적 연계성이 증대되는 과정과 병행되어야 한다. 동북아 지역경제권의 형성이 단기간에 이루어지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는 필연적으로 통일한국의 민족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역·산업개념에 기초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북한 경제를 지역간, 산업간 연계하려는 한반도 전체에 걸친 경제발전계획으로 확장되어야 한다.³⁷⁾ 사실, 이러한 민족경제 단위에서의 경제발전계획을 통해 지역개념 및 산업개념에 각각 기초한 두 가지 다른 형태의 중범위 수준 「민

36) 김국산·이유진,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pp. 114~116, 118~119 참조.

37) 예를 들면,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금강산지역 관광개발계획을 금강산-설악산-동해안 지역을 광범위하게 개발하는 관광개발계획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이나 황해안과 동해안을 공동개발구역으로 설정하고 공동어로작업을 포함한 수산업과 해양산업을 발전시키는 방안 등이 구상될 수 있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판문점을 중심으로 개성-서울-인천 지역을 대단위 상공업단지로 묶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족발전공동계획」간에는 조화가 이루어질 것이다. 또 다른 중·장기적 발전전략으로는 환동해권과 환황해권을 각각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는 방안이 구상될 수 있다. 남북한 경제가 한반도의 양 해양권을 매개로 하여 연계되고 발전하게 된다면,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명실상부하게 동북아 지역경제 속에서 민족경제가 형성되고 발전하는 계획이 될 것이다.³⁸⁾

다. 거시적 개념

「민족발전공동계획」이 발전적인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경제체제와 경제운영원리를 통합할 수 있는 계획과 함께 한반도 전체에 걸쳐 민족경제를 효율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개발전략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 거시적·구조적 차원에서의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북한 경제체제의 유기적 관계를 높일 수 있는 남북산업구조조정계획 및 남북사회간접자본확충·보완계획, 남북한 경제운영원리를 접근시키기 위한 북한체제개혁지원계획, 남북경제의 구조적 통합 및 성장을 추진할 남북경제통합계획 및 한

38) 북·미간 경제관계 정상화에 따라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 경제질서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일본, 한국·중국연안지역, 북한·만주·러시아극동지역, 중국내륙지역 등으로 나누어지는 4단계 국제적 분업체제로 발전할 것이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을 통하여 남북경제가 경제력을 갖춘 경제공동체로 발전한다면, 통일한국의 민족경제는 동북아 분업질서에서 선진경제의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다.

반도경제개발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궁극적인 개념은 남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한반도 내의 대립적 양 경제체제를 하나의 민족경제로 통합하고 경제성장을 추진해 가는 '통합과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는 (가상적) 민족경제 단위에서의 경제개발계획'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거시적 차원에서의 「민족발전공동계획」은 세계경제에서의 통일한국 민족경제의 지위확립과 동북아경제공동체의 기반확보를 위한 준비까지도 계획의 범주에 포함하게 될 것이다.

결국 거시적 관점에서의 「민족발전공동계획」은 한반도에서 경제공동체 형성과 발전을 위한 경제통합·개발계획의 의미를 가짐으로써, 남북경제교류협력을 부분적·잠정적 사업으로 포함하게 될 것이다. 이 경우,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북경제교류·협력사업의 하위개념이 아니라, 경제교류·협력의 방향과 내용을 결정하고 추진하는 남북경제관계 전반에 걸친 상위개념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민족경제의 통합과 성장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을 위해서는 당연히 계획의 구상·실천을 총괄할 담당기구가 남북한 양국의 경제부처보다 상위의 수준³⁹⁾에서 형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괄기구는 남북한 양국의 합

39) 여기에서 '상위의 수준'이라는 개념은 지시(명령)-집행(복종)이라는 행정적 위계질서보다는 계획에서의 우선성을 의미한다.

의에 의해 국가연합의 차원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다. 초기에는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가 총괄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며, 계획이 보다 광범위해지고 남북한이 남북연합의 단계에 완전히 이르게 되면 「민족발전공동계획위원회」(가칭)가 남북연합최고기구⁴⁰⁾의 산하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개념적 정의와 관련된 지금까지의 논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1>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세 가지 개념

개념 범위	계획의 내용	계획의 주체	계획참여자
미시적 (협 의)	개별 기업·사업 차원에서의 경제협력	계약당사자인 남북 기업	소수의 남북 기업 위주
중범위	지역·산업차원에서의 경제협력	남북합의에 의한 지역별·산업별 경제공동기구	계획담당기구, 다수의 기업·자본
거시적 (광 의)	남북한 경제통합 및 민족경제성장·개발	경제공동위원회 혹은 공동계획위원회	남북 정부 차원의 계획기구, 민족경제 구성원(기업, 등등)

40) 남북연합단계에서의 정치적 최고의결·행정기구에 관한 논의 및 방안에 대하여는 박영호·박종철,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pp. 163~165, 170~178 참조.

Ⅲ. 경제분야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기본틀

1. 정책목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정책목표는 통일과정과 관련하여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목표 아래에서 설정되어야 한다. 첫번째 목표는 ‘민족경제의 통일적·균형적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이라는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제시된 남북경제교류·협력의 목표이다.⁴¹⁾ 두번째 목표는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통일과정의 중간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구체적인 실천목표이다. 사실, 우리 정부는 작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상을 설명하면서, 이를 민족복리 증진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직접 관련시키고 있다.⁴²⁾ 이러한 두 가지 기본목표는 통일과정과 관련된 목적지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실천적 구상을 위해서는 좀더 구체적인 정책목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41) 「남북기본합의서」 제15조.

42) “지금부터라도 남과 북은 민족공동체 건설과 민족복리의 증진이라는 관점에서 서로 협력하여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민족의 창의와 능력을 최대한 발휘케 해야 함. 이러한 견지에서 정부는 이번에 「민족발전공동계획」에 대한 구상을 제시하고 ...” 통일원, 「8.15 대통령 경축사 해설자료」(서울: 통일원, 1994), p. 17.

가. 남북 지역경제의 보완적 발전과 경제력 격차 해소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번째 정책목표는 ‘남북경제의 조화로운 발전과 상호이익 증진을 위한 남북 지역경제의 상호보완성의 활용과 경제력 격차의 해소’이다.⁴³⁾ 남북경제의 상호보완성을 활용하고 확대함으로써, 「민족발전공동계획」의 ‘민족발전’을 위한 ‘공동계획’으로서의 의미는 확인되고, 남북경제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물적 기반을 구축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한 지역경제의 경제력 격차는 남북경제가 통일 이후 균형되고 통일된 민족경제로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장애물이 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⁴⁴⁾ 따라서 남북 경제력 격차의 해소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정책적 목표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현재 남북한 경제구조의 보완성은 ①상호보완적인 생산요소의 보유, ②경제발전단계상의 보완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⁴⁵⁾

43) 조민, “민족공동체 형성방안을 통한 통일과정,” 「民族共同體 統一方案」의 理論體系와 實踐方向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p. 112 참조.

44) 남북한 경제력 격차는 흔히 말하는 ‘통일비용’을 증대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할 것이므로, 경제력 격차의 해소를 통해 ‘잠재적’ 통일비용을 축소할 수 있을 것이다. 경제력 격차와 통일비용의 상관관계에 대한 계량적 분석으로는 Jin-Young Bae, “Speed and Timing of Economic Integration: Unification Cost Approach,” Jin-Young Bae ed. *Two Years Since German Unification: Economic Evaluations and Implications for Korea*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Friedrich Ebert Stiftung, 1993) 참조.

45) 김준한 외, 「南北韓 經濟協力 增進方案」 (서울: 산업연구원, 1992), p. 11.

생산요소의 관점에서 보면, 남한의 기술·자본과 북한의 노동력·자원이 결합된다면 남북 지역경제의 보완적 발전이 가능할 것이다.⁴⁶⁾ 경제발전단계라는 측면에서 보면, 남한에서는 노동집약적 산업이 성숙단계를 지나 조정단계에 접어들어 생산설비의 해외이전이 추진되고 있으며, 북한에서는 경공업분야의 낙후로 육성이 요망되며 중공업분야에서 새로운 기술과 설비가 필요한 상태이다.

「민족발전공동계획」 실천방안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추상적 차원에서의 논의보다 남북한의 산업구조와 국제경쟁력을 비교하여 산업부문별 남북한의 보완성을 분석하고 이에 기초하여 경제협력사업의 실천방안을 구축하는 것이다. 산업연구원의 분석에 의하면 대북 투자유망업종은 ①남한의 대중국 및 대동남아 투자진출 주종업종, ②무역통계 분석을 통해 선정된 북한의 비교우위산업, ③북한의 투자유치희망업종, ④남한의 유희설비 보유업종, ⑤단기간내 투자가능업종 등으로 분류된다. 구체적으로는 노동집약적 경공업분야에 속하는 의류·신발·완구·직물·방직·양말·가방·피혁·식품 등의 업종과 1차금속·전기전자부

46) “현재 南北韓 經濟交流와 協力에 있어서 남한은 자본과 기술, 그리고 국제경쟁력 측면에서, 북한은 노동과 자원면에서 각각 비교우위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만,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課題,” p. 95. 질-가격 관계에 기초하여 북한 노동력의 경제성에 대해 다소 회의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논문으로는 曹東昊, “北韓의 勞動力 現況,” 「轉換期の 北韓經濟: 主要 部門別 實態와 經協展望」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10) 참조.

품·TV·라디오·냉장고 등의 업종이 대북 투자유망업종으로 선정될 수 있다.⁴⁷⁾

남북한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남북간에 이루어져야 할 경제협력사업의 대상으로는 북한경제에서 특히 취약한 분야인 농·수산업분야 및 생산기반시설분야이다. 특히 생산기반시설분야에서는 전력공업, 연료·채광, 야금, 기계·금속, 건설재료 등의 업종 및 사회간접자본에 해당하는 수송·통신업종 등에서 시급한 경제협력이 요구된다. 또한 북한이 현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부문에 대한 협력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이 간접적으로 외환 애로를 타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⁴⁸⁾

나. 남북경제체제의 이질성 해소와 점진적 통합

두번째로 제시될 수 있는 정책목표는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남북경제체제의 이질성 해소 및 점진적 통합’**이다. 남북한 경제체제의 이질성은 본질적으로 시장경제체제와 명령형 사회주의경제체제 사이에서 발견된다. 통일한국의 경제공동체

47) 김준한 외, 「南北韓 經濟協力 增進方案」, pp. 15~19. 남포공단에 진출할 (주)대우는 우선적으로 셔츠, 블라우스, 재킷, 가방을 생산할 3개의 공장을 건설할 예정이다.

48) 북한의 수입우위업종은 완구·요업·전자부품·약기·피혁·정밀화학·가전제품 등이며, 수입특화업종은 전자(산업용)·섬유·금속제품·목재·전기(산업용)·고무·석유화학·공작기계·정밀기기·조선·중야·산업기계·자동차 등이다. 최신림·박동철, 「북한의 주요산업 분석」 (서울: 산업연구원, 1992), p. 23.

가 개별 기업을 핵심 구성인자로 한 개별 경제행위자들의 합리적 경제행위에 기초한 시장경제원리에 기초하리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북한경제에 자유주의적 기업경영원리와 시장경제원리를 도입하고 남북한 경제원리의 점진적 통합을 추진하는 것이 구체적 정책목표가 되어야 함은 분명하다.

현재까지의 남한경제의 발전과정을 살펴본다면, 중앙집권적 국가가 경제개발계획이라는 통제적 경제운영원리를 시장경제에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급속한 경제성장이 가능하였으며, 기업경영원리에서도 자유주의적 기업경영원리보다는 권위주의적 기업경영원리가 많이 동원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다면, 북한경제에 자유주의적 기업경영원리와 시장경제원리가 반드시 급속한 속도로 도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동안 명령형 계획경제체제 하에 놓여 있던 북한경제가 점차적·부분적으로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원리에 적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 특히 이질화된 남북한의 두 지역경제가 하나의 민족경제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상당 기간 동안 국가의 중심적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에서,⁴⁹⁾ 북한이 국가의 역할을 일정 정도 인정하는 가운데 계획과 시장의 조화로운 결합 아래에서 기업경영을 점차적으로 효율적 형태로 변화해 가도록 하는 것이 좀더 현실적이며 실천적이라고 할 수 있다.

49) 김대환, “통일경제체제와 국가의 역할,” pp. 23~27 참조. 통일과정 및 통일한국에서 국가의 경제적 역할의 중요성은 「민족발전공동계획」 자체의 필요성에서도 증명되고 있다.

경제체제의 이질성 해소와 체제원리의 점진적 통합이라는 정책목표는 경제협력사업의 추진방법과 관련하여 방향성을 제시하게 된다. 개별 경제협력사업에서 남한은 자유주의적 기업경영이 가진 창의성과 효율성이라는 장점을 북한이 경험하도록 하는 동시에 그 과정을 통해 북한이 자신들의 기업소 운영원리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직접 모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지역별·산업별 공동계획 및 잠정적 형태로나마 이루어질 민족경제 단위에서의 경제개발계획을 통해 북한은 시장기구와 계획기구가 상호보완적 성격을 지니고 운영될 수 있다는 점을 또한 배우게 될 것이다. 특히 북한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를 통한 개방정책에 남한 기업이 개별 단위로 적극 참여하고, 나아가 남한의 경제계획 관련 정책입안가 및 전문가가 자문에 참여할 기회를 가짐으로써, 남한은 북한이 경직된 명령형 계획경제로부터 자발적으로 벗어나기 위해 필요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제공할 수 있다.

다. 발전적·개방적 남북한 경제공동체 형성

「민족발전공동계획」이 추구해야 할 또 다른 하나의 정책목표는 ‘남북한 지역경제 및 통일한국 민족경제의 성장잠재력 배양과 국제경쟁력 강화’이다. 남북한 지역경제가 경제공동체를 형성해 가는 통일과정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는 바탕

을 마련하고 통일한국에 이르러 선진경제의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 참된 의미의 통일이라고 한다면,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북경제의 경제적 효율성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역간·산업간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은 남북 지역경제가 각각 현재 국제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서, 그리고 협력함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분야에서 경제협력사업을 펼쳐 나가야 할 것이다. 동시에 남북한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에서도 서로 협력함으로써, 소극적 의미에서의 국제경쟁력의 상승도 도모하여야 한다.⁵⁰⁾

남북경제의 국제경제질서에서의 지위 강화와 관련하여 추진해야 할 협력사업으로서 국제경제에서의 남북협력을 들 수 있다.⁵¹⁾ 남한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협력을 통해 북방진출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러시아 등에 거주하는 해외교포와도 유기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⁵²⁾ 북한의 경우에는

50) 주 47 참조. 남한의 경우 산업별 수입의존도는 제조업, 그 중에서도 일반 기계·전기전자가정밀기계에서 높게 나타난다. 한국산업은행 조사부, 「1993 韓國의 産業」 상권 (서울: 한국산업은행, 1993), p. 19. 그러나 이 부분에서 남북한의 협력이 얼마나 가능할지는 의문이며, 수입분야에서 남한이 북한에 의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물류는 어류·목재·생사·마그네샤·크링카·연·아연·동 등 일차산품이다. 김준한 외, 「南北韓 經濟協力 增進方案」, p. 29.

51) 「남북기본합의서」(21조) 및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1장 5조)에서도 국제경제에서의 남북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52) 제3국에서의 남북한 공동개발 사업이라는 형태로 국제경제에서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을 제시한 연구로는 이상만,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課題」 pp. 115~117 참조. 민족공동체 형성과정에서의 해외교포를 통한 「비정치

남한과의 협력을 통해 해외시장에 대한 진출에서 제도적·기술적 어려움을 좀더 용이하게 극복할 수 있으며, 개방의 초기단계에 있는 북한경제의 국제화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또한 국제경제에서의 남북한 협력은 국제경제관계에서 남북한을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인식하게 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므로, 이는 남북한 경제공동체를 단순히 한반도 내에서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하나의 단일화된 민족경제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나아가 이는 국제정치적으로도 남북관계를 통일과정을 향한 특수관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통일한국의 국민경제가 세계화된 21세기의 국제경제질서에 참여하여야 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국제무대에서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통일과정에서 남북경제를 개방적인 민족경제로 나아가게 하는 기능도 할 것이다.

2. 정책방향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현 상황에 적절한 정책방향⁵³⁾을 설정하려는 노력은 우선적인

적 사업의 공동개발·추진이라는 정책을 제시한 연구로는 백영옥, 「「한민족공동체」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제4장 1절 참조.

53) 여기에서 정책방향이라는 용어는 '목표달성을 위한 수단 혹은 행위'라는 의미로 이해되는 한에서의 정책, 즉 구체적·실천적 정책(대안)을 선택·추진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방향성을 제시해 주는 기준이라는 의미로 사

로 「민족발전공동계획」이 근거하고 있는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과정에 대한 기본관점을 검토하여야 한다.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에 의하면, 통일은 점진적·단계적으로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건설하는 과정으로 이해되고 있다. 통일에 대한 점진적·단계적 접근은 한편으로는 현재의 남북관계에 대한 이상론적 이해를 전제로 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분단상황에 대한 현실주의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상론적 입장에서 보았을 때, 분단된 남북한 ‘쌍방 사이의 관계(는)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이며 따라서 남북한 양국은 ‘평화 통일을 성취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경주할 것’⁵⁴⁾으로 이해된다. 현실주의적 관점에서 살펴보면, 남북한 양국은 전쟁을 경험하고 상호적대적·상호규정적 관계를 지속해 왔으므로, 점진적·단계적 과정을 거치면서 통일과정에 진입하고 나아가 통일과정의 자연스런 결과로서 통일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이 북한에 대한 실천적 제안으로서 의미를 가지려면, 이상론적인 동시에 현실주의적인 성격을 지닌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상정하고 있는 남북협력에 기초한 점진적·단계적 통일과정에 상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용되었다. 이러한 기준은 한편으로는 정책목표를,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배경과 현실상황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54) 「남북기본합의서」 전문.

또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정책방향은 남북경제관계발전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설정되어야 한다. 남북경제관계발전의 촉진요인으로서는 ①남한과의 경제관계개선이 북한의 해외자본 유치의 필요조건이라는 점, ②남북한 경제 교류·협력의 기술적·경제지리적·문화적 관점에서의 효율성, ③남한 기업의 대북 진출에 대한 적극적 자세 등을 들 수 있다. 반면, 저해요인으로서는 ①남북간 정치·군사적 관계의 불안정성, ②북한내 정치적 불안정성, ③북한의 낮은 대외신용도, ④북한내 시장경제원리의 결여 및 투자·경영에서의 제약, ⑤북한내 사회간접자본의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정책방향은 촉진요인을 적극 활용하고, 저해요인을 해소하는 형태로 설정되어야 한다.

이상의 분석에 기초할 때, 「민족발전공동계획」이 현실성 있는 제안으로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정책방향은 여섯 가지 정도로 요약·제시될 수 있다.

가. 경제협력사업의 점진적 확대

북한 핵문제 등장(1993.3) 이후 남북간의 공식적 대화가 완전히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에 현재 주요 쟁점이 되고 있는 사안에서부터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를 들면, 대

북 경수로 지원 사업 및 그로부터 예상되는 에너지분야 협력 사업, 그리고 쌀지원으로부터 예상되는 농업분야 협력사업 등이다.

쟁점이 되고 있는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상호 화해와 신뢰를 구축할 수 있는 개별 단위의 사업을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에너지 공동개발 사업,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지대 및 남포공단 투자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선택될 수 있는 사업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남북한이 남북연합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면, 「민족발전공동계획」은 중장기적으로 남북지역을 연결하여 공동으로 개발하는 계획 및 체제통합을 준비하는 계획으로 발전할 수 있다.⁵⁵⁾

나. 북한의 자발적 참여 유도

현재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체제의 개방·개혁을 구상·추진하고 있는 북한은 개방·개혁과정이 야기할 체제이완효과에 대하여 상당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북한 지도부는 남한과의 직접적인 교류·접촉이 가져올지도 모르는 북한 주

55) 여기에서 현재 남북한간의 교역에서 주요한 활력요인으로 등장하고 있는 위탁가공교역의 과도적 성격은 다음과 같다. 즉 위탁가공교역은 남북한간의 직접투자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이 결합되는 형태의 교역이며, 따라서 남북한 경제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위탁가공교역은 직접투자에 자리를 물려주어야 할 것이다.

민들의 정치·사회적 동요에 매우 민감하다. 따라서, 북한과의 경제협력사업은 체제의 특성상 직접 담당자가 될 수밖에 없는 북한 당국의 개혁·개방계획에 대한 전체적 구도에 일정 정도 의존하여야 한다.

북한이 개혁·개방의 파급효과를 정치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되고,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초기 사업을 통해 남한에 대한 신뢰감을 가지게 된다면, 북한은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개방을 추진하고 「민족발전공동계획」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남한은 한반도에서의 정치·군사적 긴장관계를 최대한 완화하는 한편, 경제적으로도 북한이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실질적 효과를 경험함으로써 자발적으로 「민족발전공동계획」에 나올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초기의 개별적 경제협력사업에서 남한 정부와 기업은 이윤논리 못지 않게 민족공동이익 증대라는 목적을 협력사업의 실제적 추진논리로 정착시켜야 한다. 또한 북한에게 남한이 구상하고 있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체적 사업들을 다양한 형태로 제시함으로써,⁵⁶⁾ 우리 정부는 북한이 자신의 판단에 따라 경제협력사업을 선택하고 「민족발전공동계획」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

56) 이를 위해 남한 정부는 동서독의 통합경험과 구사회주의권의 개혁·개방 경험을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정부와 민간기업의 역할 분담

근본적으로 자유경제체제에 기초하고 있는 남한의 경우, 남북 경제협력사업의 최종적 추진주체는 당연히 민간기업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민족발전공동계획」이 통일을 위한 국가적 차원에서의 협력사업이라는 점과 북한의 경우 추진주체가 정부 당국이 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남한 정부의 역할은 배제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시장기구에 기초한 사적 경제영역의 자생적 질서와 국민경제 단위의 경제계획에 기초한 정부의 통제적 개입이라는 두 개의 경제체제운영원리에 기초하여 경제성장을 효율적으로 달성한 남한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의 경제협력사업에도 일정 정도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정부는 민간기업의 경제협력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협력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남한 내부 및 남북관계에서의 제도적 장치를 형성·확대·개선하며, 제한된 형태로나마 투자지원을 구상하여야 한다. 민간기업의 입장에서는 대북투자의 단기적 이윤보다는 장기적 경제성을 더 중요시하는 차원에서⁵⁷⁾ 그리고 보다 확대된 국민경제⁵⁸⁾의 형성을 추구한다는 거시적 관점

57) 실제로 남한 기업은 남북경제협력사업 추진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새로운 시장개척 및 경제진출 교두보 확보'를 들고 있다. 전홍택·오강수, 「北韓의 外國人投資制度和 對北投資 推進方案」(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5), pp. 242~243 참조.

에서 남북경제협력사업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현재 해외직접투자의 출구를 찾고 있는 남한 기업의 상황을 고려하면, 남한 기업의 대북 투자수요가 북한의 투자수용능력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으며, 따라서 남한 기업간의 과당경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남한 기업들간의 협의에 의한 자발적 투자조정 내지는 정부의 매개에 의한 투자조정이 당분간 요구된다. 이 점에서도 민간과 정부간의 적절한 역할분담을 통한 협력이 필요하다.⁵⁹⁾

라. 북한의 개혁·통일지향 세력 육성

「민족발전공동계획」이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공동체의 형성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주요 정책방향의 하나는 북한 내부에서 개혁·개방 추진세력이 형성되고 그들이 정책적으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기본 방향과 연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

58) 국민경제의 확대란 순수 경제적 용어로 표현한다면 시장의 확대를 의미한다.

59) 전경련은 대북투자에 참여하는 민간기업들간의 협력을 위해 ①남북경협 투자방향 결정, ②과당경쟁 조정, ③대·중소기업 동반 진출, ④대북 정보 공유, ⑤북한 지역 투자환경 조사 등을 담당할 「남북경협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다(1995.6.17). 또한 전경련은 남북경협의 기본원칙으로 ①정부와 남북경협 공동보조, ②비전략물자 중심의 경협, ③과당경쟁 자제, ④단계적 경협추진, ⑤산업의 보완 발전 등 5개항을 제시하였다. 「매일경제신문」, 1995.6.14; 6.17.

이다. 또한 북한의 체제가 변화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이 북한 사회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북한에서 시민사회라고 불리는 사적 영역이 확대될 수 있는 방향으로 경제협력사업의 추진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에서 개혁·개방세력이 구축되고 사적 영역이 확대되어 감에 따라 북한 내부에서 체제전환에 대한 요구가 증대하는 동시에 남북한 내에서 통일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 남한은 북한의 경제계획 및 개방·개혁계획에 자문함으로써 북한의 체제전환 및 경제공동체 형성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경제공동체 형성 원리의 원용

남북한 지역경제를 하나의 경제공동체로 만들어 가는 과정은 북한의 체제전환과 함께 두 지역경제를 하나의 민족경제로 통합해 가는 과정이므로, 경제공동체 형성의 일반적 원리를 원용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통합과정은 통합에 참여하는 개별 경제들간의 결속도와 통합진행형태에 따라 자유무역지대,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제동맹, 완전경제통합이라는 다섯 단계로 구분한다.⁶⁰⁾ 경제공동체 형성을 목표로 하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은 이러한 다섯 단계의 발전과정에서 필요불가결한 사업들을 공동계획의 형태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남

60) 金國新·李惟眞, 「南北韓 經濟共同體形成方案」, pp. 8~13 참조.

북경제관계가 자유무역지대에 해당하는 정도로 발전할 단계에서는 남북물자·정보교류센터를 설립하는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공동시장에 해당하는 단계에서는 산업별·부문별 공동체를 형성하는 사업을 실천에 옮기고,⁶¹⁾ 경제동맹에 해당하는 단계에서는 경제정책을 조정·통합할 기구에 의해 남북 경제개발계획을 공동으로 작성·추진하도록 하는 등등의 계획이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기본틀 속에 포함되어야 한다.

바. 관련국과의 협력 및 국제기구 활용

적대적인 동시에 상호경쟁적인 관계에 있는 남북한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경제협력 추진을 위하여 초기에 국제기구 내지는 관련국을 매개체로 활용할 수 있다. 나진-선봉지역 개발계획이 유엔개발기구에 의해 추진되고 있는 두만강지역 개발계획의 구상 안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지역에서의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유엔개발기구의 조직과 전문가들에 의한 제도적·기술적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국제기구의 활용은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한의 협력뿐만 아니라 국제기구 내에서의 남북한 협력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남북한의 협력사업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⁶²⁾

61) 통일과정으로서의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였을 때, 관세동맹의 단계는 생략될 수도 있다.

62)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 방안은 백영옥,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

개혁·개방될 북한의 경제가 선진자본주의국가들의 투자대상으로 부상됨에 따라, 남한의 기업과 정부는 이들과 경쟁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개방과정에서 북한경제가 지나치게 제3국의 경제에 의존하게 된다면, 남북경제의 통합과정 및 통합 이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 따라서 과도한 국가간 경쟁의 적절한 조정과 남북경제의 원활한 통합을 위하여 「민족발전공동계획」은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도모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한반도 통일과 남북경제 통합의 필연성을 설명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⁶³⁾ 관련국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지금부터 기울여야 할 것이다.

3. 단계별 전략

앞 절에서 밝힌 점진적·단계적 추진이라는 정책방향에 비추어 볼 때, 계획의 구체성을 좀더 높이기 위하여 「민족발전공동계획」의 단계별 추진전략을 구상하여야 한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단계는 기본적으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 제시하고 있는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라는 3단계에 의거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3단계를 통일과정이라는 동적인 발전

流·協力 増大方案 研究」(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참조.

63) 예를 들면, 개방적이고 성장잠재력을 지닌 남북한 경제공동체의 형성이 동북아에서의 정치·군사적 안정에 필수적이며, 동북아국가들간의 경제협력 나아가 동북아경제권 형성에 필요한 중간단계라는 점을 설득논리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과정으로 이해한다면, 경제공동체 및 사회·문화공동체를 본격적으로 발전시켜 통일의 물질 기반을 완전히 갖추어야 할 남북연합단계는 좀더 세분화되어야 한다. 본 논문은 논의의 편의를 위해 남북연합단계를 전반기와 후반기로 나누고, 각각 공동체형성준비기와 공동체형성기로 규정할 것이다.⁶⁴⁾ 따라서, 아래에서는 화해·협력단계(신뢰구축기), 남북연합단계 전반기(공동체형성준비기), 남북연합단계 후반기(공동체형성기)에서 취해야 할 전략을 살펴본다.⁶⁵⁾

가. 화해·협력단계

화해·협력단계는 남북한이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고 신뢰를

64) 남북연합단계를 정확히 반으로 나눈다는 의미로 전반기와 후반기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전반기는 오히려 남북연합단계의 초기에서 중기에 이르는 긴 기간이 될 것이다. 따라서, 전반기는 초·중기를, 후반기는 후기를 의미한다고 이해되어야 한다. 한편 남북연합단계를 지나 통일국가가 완성되는 단계는 기간으로서의 단계보다는 일정 시점 내지는 계기를 지난 후의 상태라는 의미에서 단계로 이해된다. 그러나 통일국가가 통일헌법에 기초하여 형성되더라도, 초기 상태에서는 몇 년의 정치·경제·제도통합기간(혹은 정치공동체 형성기간)이 필요할 것이다. 이 기간을 통일국가형성완료단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65) 이 부분은 김국산·이유진의 선행 연구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다. 남북한 경제교류·협력 및 경제통합의 단계별 추진과제를 다룬 또 다른 연구 중, 제일경제연구소, 「南北韓經濟協力과 企業의 對應戰略」(서울: 제일경제연구소, 1991)은 교류·협력과정을 7단계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하청·지해명·노용환, 「統一展望과 「한민족共同體」 구상」(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3) 및 연하청·전홍택·고일동·조동호·이영섭, 「南北韓 經濟共同體形成을 위한 政策課題」(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3)는 경제통합과정을 4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구축하는 시기이며, 이러한 시기를 거침으로써 남북한은 통일
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단계는
또한 갈등과 불신이 재현될 수도 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남북
기본합의서」 이후 북한 핵문제로 인한 남북관계의 긴장은 적
대적 체제경쟁과 우호적 협력관계 사이에서 동요하는 화해·협
력단계의 불안정성 내지는 이중성을 잘 보여준다. 이러한 이중
적 성격을 고려하였을 때, 화해·협력단계에서의 「민족발전공동
계획」은 신뢰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추
진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관계의 역사적 경험과 현 상황에 대한 이해에 기초하여
보면, 화해·협력단계에서 신뢰구축을 위한 「민족발전공동계획」
추진전략은 크게 보아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그 하나는
현재 남북 사이에 주요 현안으로 제기되고 있는 문제를 중심
으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체적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경수로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우리 정부는 경제협
력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다. 특히 북한이
에너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 중유공급, 송·배전관 시설 지원, 정
유시설 및 화학발전소 지원 등을 다각적으로 요구하거나 모색
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사업을 구
체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덧붙여 쌀지원 및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방안의 모색도 가능한 일이다.

다른 하나의 전략은 북한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김정일 승

계체제를 공고화하기 위하여 구상·추진하고 있는 체제개방전략에 대응하여 경제협력사업을 선정하고 제안하는 방법이다. 북한은 남한과의 경제관계에 있어서 당국간 협력보다는 남한 민간기업과의 협력을 선호하고 있으며, 또한 경제특구에 대한 투자유치희망사업들을 제시해 두고 외국인투자를 위한 법제도를 정비해 두고 있는 상태이다.⁶⁶⁾ 따라서 현 단계의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민간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를 「민족발전공동계획」의 테두리 안으로 끌어오고 발전시키는 중·장기 전략을 세워야 한다.⁶⁷⁾

나. 남북연합 전반기

남북연합단계의 전반기인 공동체형성준비기에서는 기본적으로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는 물질 기반 확보를 위하여 북한경제가 희생되고 아울러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이 유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의 「민족발전공동계획」은 우선적으로

66) 최근 논문에서 김정일은 사회주의적 적법성을 체제의 운영원리로 강조함으로써 합리적 경제행위들이 일정한 법의 테두리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으며, 북한의 대외개방과정에서 해외투자자들의 투자행위 역시 국가차원에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김정일, “사상사업을 앞세우는 것은 사회주의 위업 수행의 필수적 요구이다.” 「로동신문」, 1995.6.21; 안인해, “北韓의 情勢: 北·中關係를 中心으로” (東アジア學會設立5周年記念大會(일본, 1995.7.23) 발표논문), pp. 3~4

67) 이는 곧 바로 남북연합 전반기인 경제공동체형성 준비기로 연결되는 전략이다.

북한경제의 회복에 필수불가결한 기반시설을 포함한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을 도모하고, 아울러 자원의 공동개발 등과 같은 사업을 추진한다. 북한이 본격적인 개혁·개방에 접어들게 되면 남북한간 자유무역지대 형성을 위한 교통·통신·정보망을 연결하고, 자유무역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구성하는 협력사업을 추진할 것이다.⁶⁸⁾

북한 경제력 회복으로부터 시작하여 북한의 체제개혁·개방을 통한 남북한 자유무역지대 형성에 이르는 기간 동안 우리 정부의 「민족발전공동계획」은 기본적으로 시장경제원리의 북한 경제로의 전파에 전략적 초점을 두어야 한다. 북한이 시장경제 원리 도입을 통한 경제성장에 성공하는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적극적 대북지원정책과 민간기업들의 자발적 참여가 긍정적 기여를 할 수 있다면, 남북 자유무역지대의 형성은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우리 정부의 성급한 통일협상이나 민간기업에 의한 자유주의적 기업경영원리의 강요는 자제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정부와 민간기업은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특구를 통한 성장전략에 호응하는 형태로 대북한 경제특구 투자기구를 정부와 민간의 협의체 형태로 설립·운영하는 지혜를 발휘하여야 한다.

아울러 남북 경제관계가 점차 성숙하여 다음 단계로 넘어갈

68) “남북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킨다”는 「남북교류·협력 부속합의서」(제1장 1조 10항)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남북한 자유무역 지대는 곧바로 관세동맹의 성격을 지니게 될 것이다.

시점에 이르면, 남북 경제협력사업은 개별 기업이나 개별 사업의 차원에서라도 남북 지역경제의 산업간·지역간 보완성과 연계성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본격적으로 남북 경제의 연계성에 기초한 경제개발계획의 형태는 아니더라도, 대부분의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완적일 수 있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⁶⁹⁾

다. 남북연합 후반기

자유무역지대가 충분히 발전하고 남북한의 통일과정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남북한 지역경제는 물자·자본·노동의 자유로운 이동을 허용하는 공동시장의 단계에 접어들어야 한다. 공동시장이 형성되면, 시장경제원리에 의거한 경제행위를 통하여 남북한 지역경제의 산업별·지역별 연계성은 확대되어 갈 것이다. 특히 산업별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역개념에 기초하여 남북한 지역을 연결한 지역발전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남북한 지역경제의 보완성이 왜곡되지 않고 민족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적 영역의 경제활동이 조정될 수 있도록 남북한 정부의 공동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남북한 정부는 공동시장의 최종단계에 이르면 공동

69) 특히 현재의 남북한 경제력을 비교하였을 때, 북한 경제의 남한 경제에 대한 의존성이 확대될수록 경제공동체의 형성가능성은 높아질 것이다.

으로 한반도경제개발계획을 구상·추진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경제동맹의 단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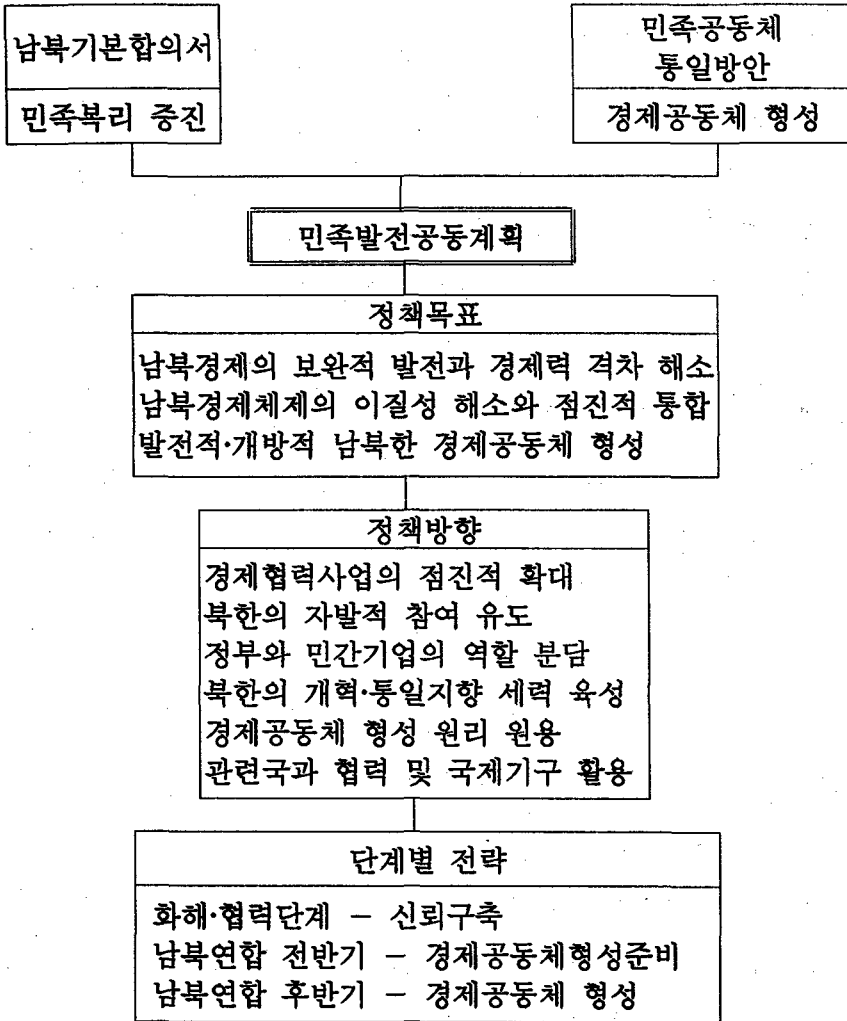
다른 한편, 북한 경제체제의 완전한 전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할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체제개혁정책을 공동으로 추진한다. 체제개혁정책은 구체적으로 경제제도를 바꾸는 구조조정정책과 체제이행과정에서의 불안정성을 억제할 안정화정책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적으로 구조조정정책은 사유화, 가격자유화, 무역자유화, 제도·기구개편 등을 포함하며, 안정화정책은 실업방지, 임금상승억제, 긴축정책, 보조금삭감, 사회보장제도개선 등을 포함한다.⁷⁰⁾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보았을 때, 남북연합 후반기인 경제공동체형성기에서는 정부와 민간의 협력 및 남북한 정부간의 협력을 조직적으로 이루어 내려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 또한 남북한 경제체제의 수렴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남북한 경제단위들이 협력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경제공동체가 통일을 이루는 자발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성장잠재력을 확대하는 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상에서 제시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기본틀을 도표화하여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70) 간단히 말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전환은 시장가격의 형성, 사유화 및 소유제도의 다양화, 경쟁원리의 도입, 금융제도의 개선, 대외경제관계의 자유화 등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도표 1>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기본틀



IV. 세부 추진 전략

남북경제교류·협력의 구체적 사업과 관련하여서는 이미 정부에 의한 사업 제안뿐만 아니라, 상당 수의 기존 연구가 존재한다. 우리 정부는 이미 1982년 20개 항의 대북시범실천사업을 제안하였으며, 그 중 경제교류·협력사업으로 볼릴 수 있는 것으로는 ①서울·평양간 도로 연결·개통, ②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 지역에 대한 자유관광지역 공동개발, ③인천항과 (진)남포항 개방, ④공동어로 구역 설정, ⑤일용생산품의 교역, ⑥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⑦동일 제조업체간의 기술자 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 교환 개최, ⑧비무장 지대 공동 개발 등이 있다.⁷¹⁾ 더욱이 「남북교류·협력부속합의서」에는 남북한이 합의한 경제교류·협력의 기본 방향 및 협력사업의 개요가 제시되어 있다.⁷²⁾ 한편, 민간에 의한 연구들 역시 남북경제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많은 방안들과 구체적 사업들을 제시하고 있다.⁷³⁾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구체적 사업들을 열거하기보다는 「민족 발전공동계획」의 개념 및 구체적 사업들의 효과에 따라 남북

71) 한국국제문화협회, 「남북대화」, 제28호, pp. 85~86.

72) 부록 참조.

73) 그 중에서도 특히 제일경제연구소, 「南北韓 經濟協力과 企業의 對應戰略」, 제5장; 김도경·신민영, 「南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과 展望」(서울: 력기금성경제연구소, 1992), 제4장; 조동호·최병선, 「南北韓 示範的 經濟協力事業의 推進方向」(서울: 한국개발연구원, 1994); 이상만,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課題” 등을 참조.

경제협력사업을 분류하고, 사업들간 우선순위를 단계별로 제시한 후, 이에 기초하여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한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몇몇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을 제시할 것이다.

1. 단계별 추진 사업

「민족발전공동계획」의 틀에 기초하여 추진될 남북경제협력사업들은 먼저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세 가지 개념에 기초하여 분류될 수 있다. 미시적 개념으로 파악된 「민족발전공동계획」에 해당하는 사업으로는 경수로지원사업, 경공업 위주 개별 기업 대북투자, 해외에서 추진할 개별 사업에서의 노동력의 공동 활용,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개별 기업의 투자 사업, 북한 노동자·경영인 훈련, 물자·정보교류센터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중범위 사업으로는 남북투자개발회사 설립, 농업분야 지원 사업, 북한의 경제특구 개발계획에 대한 자문·협력, 금강산-설악산지역 관광개발 사업, 황해권(인천-남포)지역 공동개발, 공동어로사업, 교통·통신·정보망 연결, 산업별 공동체 형성, 비무장지대 공동개발, 남북한 환경보호계획 등을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거시적 관점에서 추진하여야 할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사업으로는 산업구조조정계획, 국제영역에서의 남북한 공동개발계획, 황해안 대륙붕 공동개발사업, 사회보장·보험제도

통합·개선, 한반도 경제개발계획, 국제경제에서의 남북한 단일 경제 인정, 환황해·환동해경제권 형성 계획 등이 있다.

또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정책목표에 비추어 각각의 구체적인 사업들이 가져올 기능적 효과들을 살펴보고, 그에 의거해 각 사업들을 분류해 볼 수도 있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체적인 사업들은 효과에 따라 일곱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그 각각에 해당하는 사업을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화해·신뢰구축을 위한 사업: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 북한 경제특구에 대한 남한 개별 기업의 직접 투자, 북한 식량문제 해결을 위한 농업분야 협력사업, 노동력의 공동 이용, 군수산업의 민수산업으로의 공동 전환, 비무장지대 공동개발 등

② 북한경제의 회생 및 남북한 경제력 격차의 축소를 위한 사업: 북한의 기반시설 및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업, 북한의 민간 소비영역(경공업, 유통업 등)에서의 경제협력사업, 대북한 물자·기술·자본 지원사업 등

③ 남북 산업간·지역간 연계성 확대 사업: 에너지분야 공동 개발 사업, 철강·석탄공동체 형성사업, 교통·통신·정보망 연결 사업, 금강산-설악산지역 관광개발 사업, 서해안 지역 공업단지 형성, 황해안대륙붕 개발사업 등

④ 북한 경제체제의 전환 및 이질성 해소를 위한 사업: 남북한 공동 투자에 의한 기업 운영, 북한 기업소 운영에 대한 자

문, 북한의 지역개발계획 및 경제개발계획에 대한 자문 등

⑤남북경제공동체의 경제력 및 성장잠재력을 배양하는 사업: 북한지역에 첨단산업 기지 구축, 환황해·환동해경제권 형성에 대비한 산업구조 및 지역경제구조 개편 등

⑥국제경제에서 남북경제공동체의 정체성을 증대시키는 사업: 국제기구에 의한 사업(두만강지역개발계획 등)에의 공동 참여, 국제기구에 공동가입의 단계를 거친 후 단일 국가로 가입, 해외교포를 통한 남북경제협력사업, 제3국(러시아, 중국, 베트남 등)에서 남북 경제협력사업, 동북아 에너지 파이프라인 설치 사업 등

⑦남북 경제공동체 형성을 위한 경제적 제도 통합 사업: 남북한 화폐·금융제도 통합, 남북한 사회복지제도 통합 등

이상에서 분류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체적 사업들은 일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추진될 때 자체 사업의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남북경제관계 발전 및 경제공동체 형성에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정책목표와 정책방향을 고려하여 구체적 사업들의 우선순위를 설정하여야 한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을 미시적·중범위적·거시적 개념에 따라 나누어 볼 때, 각 개념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성격상 협의의 개념으로부터 광의의 개념으로 나아갈수록 확대와 발전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미시적 경제협력사업들은 「민족발

전공동계획」의 초기단계(화해·협력단계)에, 중범위 사업들은 중기단계(경제공동체형성준비단계)에, 거시적 사업들은 최종단계(경제공동체형성단계)에 각각 대응하여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경제공동체 형성과정에서 요구되는 북한 체제의 전환을 고려하였을 때, 개념수준과 추진단계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다.

한편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체적 사업들이 정책목표 달성에 이바지할 기능적 효과를 기준으로 나누어 본 분류에서는 화해·신뢰구축을 위한 사업 및 북한경제 희생 사업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다음 단계에서는 남북한 경제의 산업간·지역간 연계성을 높이는 사업 및 국제경제에서 남북경제공동체의 정체성 증대 사업 등이, 마지막 단계에서는 북한 경제체제 전환과 남북경제 제도통합 사업 및 남북경제공동체 경제력 배양 사업 등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분석을 기초로 「민족발전공동계획」 세부 사업들의 단계별 우선순위를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도표 2> 「민족발전공동계획」 단계별 사업 계획표

	화해·협력단계 (신뢰구축기)	남북연합 전반기 (공동체형성준비기)	남북연합 후반기 (공동체형성기)
미시적 개 념	경수로지원사업, 경공업 위주 개별 기업 대북투자, 노 동력의 해외에서의 공동 활용, 물자 정보교류센터 설립	북한의 경제특구에 대한 개별 기업의 투자 사업	북한 노동자·경영 인 훈련, 군수산업 에서의 개별 기업 들의 민수산업으 로의 전환
중범위 개 념	농업분야 지원 사 업, 북한의 경제특 구에 대한 개발계 획 자문·협력	남북투자개발회사 설립, 북한 경제특 구에 대한 정부 차 원에서의 투자, 공 동어로사업, 교통·통 신·정보망 연결	금강산-설악산지 역 관광개발 사업, 황해권(인천-남포)지역 공동개발, 비무장지대 공동 개발, 산업별 공동 체 형성
거시적 개 념	남북경제교류·협력 공동위원회 가동	남북 산업구조조정 계획 마련, 국제경 제에서의 남북한 공 동개발계획, 황해안 대륙붕 공동개발사 업, 남북한 환경보 호계획, 동북아 에 너지 파이프 라인 설치	북한 경제에 대한 구조조정·안정화 정책, 한반도 경제 개발계획, 남북 경 제·사회제도 통합, 국제경제에서의 남북한 단일경제 인정, 환황해·환동 해경제권 형성

2. 정책적 고려사항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세부 사업들에 대한 단계별 우선순위

설정과 관련하여, 「민족발전공동계획」을 추진할 때 정부 차원에서 유의해야 할 몇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을 도출해 볼 수 있다.

첫째, 정부는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적절한 구분과 조화를 추구하여야 한다. 적대적 상호의존관계라는 남북관계의 역사적 특수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남북경제관계가 결코 순수경제논리에 의하여 발전할 수는 없겠지만, 대립적 사회경제체제의 통합이라는 문제를 포함하고 있는 남북한 통일의 문제가 순수하게 정치·안보논리만으로 해결될 수도 없을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과정에서도 정부는 경제관계와 정치관계가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정책적 예지를 발휘하여야 한다.⁷⁴⁾ 다소 단순하게 말한다면, 「민족발전공동계획」은 일단 정치적 합의에 의해 개별 경제협력사업이 선정·추진된 후에는 경제논리에 충실하게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여야 한다.⁷⁵⁾ 특히 민간기업의 대북투자에서는 정치적 논리가 억제되고, 경제적 차원에서의 중·장기적 투자계획이 경제공동체 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⁷⁶⁾ 정부는 경제논리에 의거한 남북경제

74) 흔히 정부(혹은 국가)와 사적 영역(혹은 시장)의 역할분담과 협력이라는 표현을 통하여 경제논리와 정치논리의 조화를 말하기도 하지만, 여기에서는 경제관계발전과 정치관계발전의 단계적·보완적 관계를 염두에 두고 있다.

75) 물론 개별 경제협력사업의 선정은 정치적·군사적·경제적 논리의 복합적 상호작용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관계가 일정 단계에 접어들면, 당국간 남북대화를 통하여 다음 단계로 발전할 수 있는 정치적·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둘째,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과 관련된 재정지출에 있어서 정부는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안정된 자원 확보를 위해 정책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재원의 배분에 있어서는 민간기업의 차원에서 추진될 수 없는 사업 및 북한의 기반시설·사회간접자본 확충사업에 중점적으로 정부의 재원이 동원되어야 할 것이다. 자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서 국제금융기관의 활용 및 국내적 통일기금의 축적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책의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일관성을 획득·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는 현재 각 부처에서 추진되고 있는 남북경제협력 추진계획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기본틀에 의거하여 총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⁷⁶⁾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통일원을 중심으로 ‘민족발전공동계획 (남측) 기획단’(가칭)을 형성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민족발전공동계획기획단’이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민족발전공동계획기획단’은 민간기업과의 역할분담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는 창구가 될 수 있다.

76) 경제적 논리에 기초하여서도 정부의 일정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치적 논리의 억제가 정부의 역할을 배제하지는 않는다.

77) 정부의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협력사업에 대하여는 김도경·신민영, 「南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과 展望」, 제5장 1절 참조.

3. 주요 사안별 추진 전략

본 절에서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실천과정에서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주요 사업들에 대한 추진전략을 점검한다. 특히, 당장 남북한간에 현안으로 제기된 사업 혹은 우리 정부의 직·간접 참여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 제시된 사안별 추진전략은 개략적일 뿐이다. 이러한 사안별 추진전략을 개략적 형태로나마 제시함으로써, 본 연구는 「민족발전공동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들이 좀 더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가. 경수로 지원 사업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은 남북관계에서의 현안 문제일 뿐만 아니라,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번째 추진 사업으로 우리 정부가 설정한 사업이다. 나아가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은 규모의 방대성이나 사업 자체의 정치·군사적 성격으로 인하여 국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따라서 경수로 지원 사업에서 우리 정부 및 기업이 성공적으로 역할을 다할 때, 남북관계와 「민족발전공동계획」의 획기적 발전과 함께 통일과정에서 남한의 주도적 역할이 확보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또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장기적으로 전력난을 해소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하다.⁷⁸⁾

남북(경제)관계의 발전 및 북한 핵투명성의 확보라는 이중적 성격을 지닐 수밖에 없는 대북 경수로 지원에서 우리 정부는 특히 두 가지 측면에 유의하여야 한다. 첫째, 경수로 지원에는 상당수의 남한 인력과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지만, 경수로 지원 사업이 남북경제관계의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정치적 색채를 띠지 않는 전략적 태도가 요구된다. 둘째, 북한 원자력 기술자들과의 접촉 및 기술교류·협력을 강화함으로써 북한의 원자력 기술을 정밀하게 파악하는 동시에 핵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신뢰를 구축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경수로 지원 사업에 북한 인력의 참여를 보장하고 원자력 기술과 관련한 남북 학술회의 개최 등을 실현하도록 하여야 한다. 경수로 지원 사업이 이처럼 순조롭게 추진될 경우,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첫번째 사업은 평화적 핵 에너지 개발 사업으로 발전될 것이다.

경수로 지원 사업의 비용조달과 관련하여 정부는 유상지원 원칙을 전제로 국제금융기관을 통한 차관, 남북협력기금 할당, 채권발행 등 다각적 방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비용조달과 관련하여 정책결정에서 고려해야 할 두 가지

78) 대북 경수로 지원의 정치·군사·경제적 성격에 대해서는 전성훈, “대북 경수로 지원의 문제점과 정부의 전략,” 『통일경제』, 제8호 (서울: 현대경제사회연구원, 1995) 참조. 또한 본 논문의 경수로 지원에 대한 논의는 전성훈의 논문에 주로 의존하였다.

사항은 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민부담의 최소화이다. 특히, 북한의 현금상환능력이 불투명한 점을 감안하여 원자재수입권, 자원개발권, 경수로 전력공급 등 현물상환을 보장받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편,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대북 경수로 지원 사업은 남한 원자력 기술의 대외수출과 직접적인 관련을 맺고 있다. 따라서 대북 경수로 지원을 계기로 남한 원자력 기술의 해외수출을 위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동시에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쌀 지원 사업 및 농업분야 협력 사업

최근 북한의 쌀 지원 요청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을 결정하고, 이를 위한 남북협상을 추진하고 있다.⁷⁹⁾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남북한은 이를 계기로 농업분야에서의 남북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곡물분야와 관련하여서는 북한의 벼농사에 대한 기술지원 및 비료·농약지원과 함께 시베리아 지역 등에서 남북협력에 의한 곡물생산사업 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남한은 수급의 불일치에 따라 일부 농작물(낙화생, 호

79) 대북한 쌀지원 방안에 대하여는 남궁영·최수영,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 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5) 참조.

두, 고사리, 사과 등)을 북한으로부터 반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중국으로부터도 다량의 농작물(고사리, 도토리, 인삼 등)을 수입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북한 및 중국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는 농작물과 관련하여 북한과 계약재배형식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특히 남한에서 생산할 경우 노동력이 과다하게 투입되거나 생산비가 높은 농작물에 대한 계약재배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농작물을 북한으로부터 계약재배에 의해 대체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북한에서 재배가능한 환금작물 및 특용작물을 남한의 자본 및 기술(하우스재배 기술 등)의 투입을 통해 계약재배하도록 하며, 위탁재배에서 생산된 농작물을 남한의 기술 및 자재(알루미늄캔 등) 공급에 의해 북한에서 가공처리(과일쥬스 및 과일통조림 등)하여 남한이 수입 혹은 자체 소비하도록 한다.

다.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협력사업⁸⁰⁾

북한이 경제개방전략의 첫번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개발계획에 대한 남한 기업의 투자는

80)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와 관련하여서는 최수영, "북한의 자유경제무역지대 활성화 방안," 『統一研究論叢』, 제3권 1호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김학수, 「두만강지역개발계획에 대한 논의와 전망」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3) 참조.

북한의 정책방향을 고려하였을 때 초기 단계에는 개별 기업과 개별 사업의 단위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광범위한 투자계획에도 불구하고, 초기 단계에서의 투자 대상사업은 섬유·의류분야, 목재·가구분야 및 일부 중화학분야(정유산업, 시멘트산업 등)가 될 것이다. 현재 각 분야에 대한 남한 기업들의 투자진척은 정부의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 이후 현지조사 및 투자협상의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초기 단계에서의 남한 기업의 개별적 진출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나면,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중·장기적 투자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기에는 북한 정부뿐만 아니라, 남한의 투자 기업들과 정부가 공동으로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나진-선봉지역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⁸¹⁾ 및 북한의 노동력 운용과 기업운영에 관련된 좀더 개혁적인 조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나진-선봉지역의 개발계획은 두만강 지역의 개발계획 및 환동해경제권 형성계획과 연결되어야 하며, 남북한 정부의 공동관리하에 모든 계획들이 구상·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81) 사회간접자본 중 철도부문에 대한 투자가 최우선시되어야 하며, 철도와 연결된 항만의 개발에도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이 계획하고 있는 신공항 건설과 같은 사업은 환동해경제권과 관련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라. 남포공단 협력사업

북한은 사회간접자본이 부족하고 경제지리적 유망성이 아직 확보되지 못한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 부진하자, 외국인 투자를 남포공단으로 유도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서해안 지역 경공업 수출전략기지를 건설하려고 하고 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든 기존 공업지역으로 발전되어 있는 남포공단이 초보적 형태로나마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으므로 투자대상 지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할 것이다.

현재 남한의 (주)대우가 남포공단에 셔츠·블라우스·재킷·가방 등의 생산공장 설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공장건설에 필요한 기술자를 파견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최근 한일그룹이 남포공단에 스웨터·모포·신발 제조공장을 세우기로 하고, 북한의 조선은하무역총회사와 구체적 협의에 들어갔다.⁸²⁾ 한일그룹의 대북투자는 미국내 법인명의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남한 기업의 대북투자에 있어서 새로운 투자확대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중·장기적으로 남포공단 개발은 북한의 서해안 지역 공업단지 형성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남한 기업들의 개별적 진출이 정착단계에 이르면 남북한을 잇는 서해안 지역에 공업단지를 형성·개발하는 계획을 구체적으로 논의하여야 한다. 서해안 지역에 대규모의 공업단지가 형성된

82) 「한겨레신문」, 1995.7.24.

다면 장차 환황해경제권의 형성시기에 남북한 경제공동체가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마. 금강산지역 관광개발사업

‘금강산 자유무역지대’를 설정하여 금강산지역을 관광지대로 개발하려는 북한의 계획에 개별 기업이 개별 사업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남북경제협력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금강산지역 관광개발 사업은 초기에 관광호텔 건립 및 관광회사 설립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것이다. 금강산지역 관광개발 사업이 일정 단계에 접어들면, 도로·항만·공항 등의 건설에 남한의 기업들이 공동개발회사의 형태로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금강산지역의 관광개발 사업은 설악산지역과 연결하는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 경우 금강산-설악산-동해안을 잇는 종합관광단지를 남북한 정부가 공동으로 개발·확장하는 사업을 계획·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북한이 정부와 금강산 국제그룹의 합영의 형태로 구상하고 있는 ‘금강산 관리개발회사’에 남한 기업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⁸³⁾

83) 북한은 현재 원산(상·공업지역)에서 금강산(관광지역)을 연결하는 경제지역을 형성하려고 하고 있다. 이 경우 관광개발사업을 핵심으로 한 금강산지역은 관광과 상·공업을 동시에 갖춘 복합경제지역으로 발전될 가능

바. 물자·정보교류센터 설립 및 교통·통신망 연결

현재 남북한의 물자교류는 대부분 간접교역의 형태를 띠고 있다. 간접교역의 문제점들을 고려할 때,⁸⁴⁾ 남북한은 간접교역의 직접교역으로의 전환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나진-선봉자유경제무역지대 혹은 제3국(중국·홍콩 등)내에 남북교역을 담당할 물자·정보교류협회 내지는 교역사무소를 남한과 북한의 공동투자에 의해 설치함으로써 실질적인 남북한 직접교역을 담당하도록 한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휴전선 인근지역에 물자·정보교류센터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물자·정보교류센터의 설립은 남북한 당국의 합의에 기초하여, 북한의 대외무역기관 및 남한의 기업·무역기구들의 참여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남북교역의 발전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는 국제법상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하여, WTO체제 하에서 남북한 교역이 민족내부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물자·정보교류센터의 설립이 추진됨에 따라

성을 가지고 있다. 금강산 국제그룹, 「금강산 관광개발 타당성조사보고서」(1993.3) 참조.

84) 간접교역은 ①거래성사의 지연성·비효율성, ②통제되지 않는 위험부담, ③사고발생시 처리과정의 불명확성 등으로 인한 경제적 비효율성이 주요 문제로 지적되고 있으며, 또한 남북교역의 발전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물자·정보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남북한간에 끊어진 교통·통신망을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우선적으로 부산·대구·대전·서울-개성·평양·신의주를 잇는 육로와 인천-남포, 부산·포항·동해-원산·청진·신포·나진·선봉을 잇는 해로를 개통하고, 김포-순안을 잇는 항공로도 개설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중·장기적으로 남북 정부간 합의에 기초한 공동사업을 통해 통신망을 연결하고, 나아가 남북간의 방송망도 연결하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사. 대북 투자기구 혹은 남북투자개발회사 설립

북한지역에 대한 남한 기업의 투자는 중·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투자과잉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기업들간의 경쟁과잉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북한지역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대북 투자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투자의 분담을 조정할 수 있는 투자기구를 설립하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대북 투자기구는 두 가지 형태로 설립할 수 있다. 하나는 남한의 기업뿐만 아니라 제3국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국제적인 투자기구를 형성하는 방안이다.⁸⁵⁾ 다른 하나는 남북한 정부, 대외무역기구 및 남한 기업을 중심으로 남북투자개발기구

85) 이에 대하여는 박성조, “東西獨間の 交流 및 協力形態와 南北韓 交流에 주는 示唆點,” 國土統一院, 「南北韓 經濟交流協力の 摸索」(서울: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1989), pp. 402~407 참조.

를 형성하는 방안이다.⁸⁶⁾ 중·장기적으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구상 아래 경제공동체 형성에서 민족적 역량의 발휘와 주도권의 확보를 위해서는 두번째 방안이 보다 바람직할 것이다.

남북투자개발기구는 북한이 필요로 하는 기술도입·공장설비 수입에 자문·원조·투자를 할 것이며, 남북한 경제협력을 위한 구체적 사업을 공동으로 발주·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기구는 남북경제협력 및 대북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보 교환, 전시회 개최, 전문가 회의 등을 개최하여, 대북 투자를 위한 여건 마련에 적극적으로 기여할 수도 있다.

아. 에너지 분야 지원 사업

북한경제의 당면 문제는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공장가동률의 저하이므로,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은 북한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수 있는 분야이다.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의 주요 대상은 현재 가동중지 상태에 있는 정유공장의 재가동, 화력발전소의 보수, 송·배전시설의 정비·확충, 전력공급, 석탄생산산업 지원 등이다.

최근 북한이 LG그룹 및 미국의 스텐튼사와 함께 나진지역의 정유공장시설 재가동 및 화력발전소 설립에 대하여 적극적이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에너지 분야에서의 남북경제협력사업

86) 전경련이 발족한 「남북경협특별위원회」에 대해서는 주 58 참조.

은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에너지 분야에서의 협력 사업은 사업규모 및 산업의 특성상 남한의 기업이 단독으로 진출하는 것보다는 제3국의 기업들과 공동투자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분야 협력 사업은 동북아경제공동체 형성에서 주요한 기반이 될 동북아 에너지 파이프라인 설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자. 북한 노동력 활용 및 기술자, 경제·경영전문가 교육

정부는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 조치」에서 제3국에서의 북한 노동력의 고용을 시사한 바 있으며, 대우그룹은 수단 방직공장에 1~2백명 규모의 북한 인력을 고용하는 문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제3국에서 북한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해 중·장기적으로는 북한 노동자의 자유주의적 기업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북한 노동력의 기술연수는 남·북한 내에서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일부 기업은 중국 등지에서 북한 노동력에 대한 소규모 기술연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⁸⁷⁾ 북한 인력의 기술연수는 위탁가공교역 및 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87) 「중앙일보」, 1995.3.13 참조.

반드시 필요하므로, 제3국에서의 북한 노동자의 기술연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장기적으로는 남한의 특정 지역에서 북한 인력의 기술연수를 추진하도록 한다.⁸⁸⁾ 아울러, 북한의 경제관련 상급 정책결정자 및 경영책임자에 대한 연수를 금융, 무역, 관광 분야 등에서 실시하는 방안도 북한 체제의 변화를 위해 고려하여야 한다.

차. 비무장지대 활용 방안

비무장지대의 활용은 한편으로는 남북한간의 신뢰구축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비무장지대의 자원을 경제공동체 형성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 비무장지대 활용 방안으로는 순수경제적 차원에서, 환경보호적 차원에서, 기타 사회·문화·과학적 차원에서 모색될 수 있다.

비무장지대 활용 방안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과학기술 협력단지·물자정보교류센터·체육시설·호텔 등을 포함할 평화시 건설, 수자원 및 산림자원의 공동개발, 노동집약적 산업을 중심으로 한 경공업단지 건설 등이 가능하다.⁸⁹⁾ 이러한 사업들의

88) 북한은 이탈자 발생을 우려하여 해외사업에서의 북한 노동력 활용을 꺼리고 있다. 작년부터 문제가 되고 있는 시베리아 벌목공 탈출사건을 고려하였을 때, 해외에서의 북한 노동력 활용은 남북한 정부간의 협약을 필요로 한다.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형편이다.

추진과정과 함께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를 위한 남북
한간의 군사적 협력도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V. 맺음말

「민족발전공동계획」은 개별 단위의 사업으로부터 국가차원의
사업에 이르는 경제협력사업을 통하여 경제공동체를 점진적·단
계적으로 형성함으로써, 분단된 민족의 통일을 자연스럽게 바
람직한 형태로 달성하려는 정책적 의지와 실천적 지혜가 담겨
있는 통일정책의 구체적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민족발
전공동계획」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남북경제교류·협력을
접합시킬 수 있는 정책적 개념인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개념
을 기초로 정부는 민간기업 및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남
북경제교류·협력이 경제공동체 형성이라는 목표점을 향하여 보
다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방향과 단계적 전략을
설정하고 통제하는 기본틀을 가지게 되었다.

분단 50주년을 맞는 오늘날의 남북한 현실을 통일과정으로
파악하는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민족발전공동계획」
은 남북한에 의하여 통일과정의 기본적 구도로 채택된 「남북
기본합의서」 및 「부속합의서」들의 실천방안으로서도 의미를

89) 김도경·신민영, 「南北韓 經濟協力 推進現況과 展望」, pp. 110~112.

지닐 수 있다. 「남북기본합의서」가 규정한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된 특수관계'로서의 남북관계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추진과정에서 실천적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며, 또한 통일은 「민족발전공동계획」이라는 남북한 공동노력의 과정에서 하나의 발전적 계기로서 자연스럽게 다가올 것이다.

북한의 정치경제체제가 위기국면에 접어들고 독일통일이 급속한 흡수통일의 형태로 이루어진 90년대 초부터 한반도의 통일에 대하여는 두 가지 전망이 우세한 형태로 제시되고 있다.⁹⁰⁾ 그 하나는 북한 체제의 붕괴 이후 남한에 의한 북한의 급속한 흡수를 통한 통일을 전망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남북한의 체제경쟁을 전제로 북한 체제의 개혁·개방에 따라 남북한 두 체제의 장기간에 걸친 점진적 수렴을 통한 통일을 전망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두 가지 전망은 일정한 정도의 현실성을 가지고 있으나, 민족통일을 향한 남북한 양 국가의 노력과 한반도 통일을 중·장기적 전망속에 놓을 수밖에 없는 동북아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고려하였을 때 다소 소극적인 형태의 전망이라고 보여진다. 특히 세계사의 흐름과 「남북기본합의서」로 표현된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의지를 고려하면, 이러한 두 전망을 벗어날 수 있는 새로운 통일과정에 대한 전망과

90) 이우영, “현단계 통일론의 반성: 흡수통일론과 점진적 통일론을 중심으로,” 강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통일에의 길: 두가지 전망」(1994년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참조.

이에 적합한 통일정책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남북한의 공동노력에 의해 경제공동체를 형성하고 나아가 사회·문화공동체와 정치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정책적 사고에 기초한 「민족발전공동계획」 및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현실적 통일과정에 대한 적극적 의미를 지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현재까지의 남북경제관계를 포함한 전반적 남북관계는 국제정세, 동북아정세, 한반도 정세, 남북한 세력관계, 남북한 내부의 정치·경제상황 등에 영향을 받으며 발전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남북한이 어떻게 주도적으로 대응하며, 그 과정을 통하여 자주적인 통일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민족발전공동계획」은 남북관계 발전에 유리한 상황이 다가오고 있을 때, 혹은 불리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남북관계의 발전을 남북한이 주도적으로 이루어나가기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뿐만 아니라, 「민족발전공동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남북한의 공동노력은 장기적으로 통일의 사회·경제·문화·정치적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며, 예기치 못한 흡수통일에도 일정한 정도의 대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부록: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제3장 남북교류·협력’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중 제1장 경제교류·협력(1992년 9월 17일 발효)

제1조 남과 북은 민족경제의 통일적이며 균형적인 발전과 민족전체의 복리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공동개발, 민족 내부교류로서의 물자교류, 합작투자 등 경제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 ① 남과 북은 물자교류와 석탄, 광물, 수산자원 등 자원의 공동개발과 공업, 농업, 건설, 금융, 관광 등 각 분야에서의 경제협력사업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대상과 형식, 물자교류의 품목과 규모를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 ③ 남과 북은 자원의 공동개발, 합영·합작 투자 등 경제협력사업의 규모, 물자교류의 품목별 수량과 거래조건을 비롯한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쌍방 교류·협력 당사자들 사이에 토의하여 정한다.
- ④ 남과 북 사이의 경제협력과 물자교류의 당사자는 법인으로 등록된 상사, 회사, 기업체 및 경제기관이 되며 경우에 따라 개인도 될 수 있다.

- ⑤ 남과 북은 교류·협력 당사자 간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 경제협력사업과 물자교류를 실시하도록 한다.
- ⑥ 교류물자의 가격은 국제시장가격을 고려하여 물자교류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⑦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는 상호성과 유무상통의 원칙에서 실현한다.
- ⑧ 남과 북 사이의 물자교류에 대한 대금결제는 청산결제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쌍방의 합의에 따라 다른 결제방식으로 할 수 있다.
- ⑨ 남과 북은 청산결제은행 지정, 결제통화 선정 등 대금결제와 자본의 이동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 ⑩ 남과 북은 물자교류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남북 사이의 경제관계를 민족 내부관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를 협의·추진한다.
- ⑪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공업규격을 비롯한 각종 자료를 서로 교환하며 교류·협력 당사자가 준수하여야 할 자기측의 해당 법규를 상대측에 통보한다.
- ⑫ 남과 북은 경제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분쟁조정절차 등에 대해서

는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다.

⑬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서 경제교류와 협력에 참가하는 상대측 인원들의 자유로운 경제활동과 편의를 보장한다.

제2조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실현한다.

① 남과 북은 과학·기술, 환경분야에서 정보자료의 교환, 해당 기관과 단체, 인원들 사이의 공동연구 및 조사, 산업부문의 기술협력과 기술자, 전문가들의 교류를 실현하며 환경보호대책을 공동으로 세운다.

② 남과 북은 쌍방이 합의하여 정한 데 따라 특허권, 상표권 등 상대측 과학·기술상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 남과 북은 끊어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해로, 항로를 개설한다.

① 남과 북은 우선 인천항, 부산항, 포항항과 남포항, 원산항, 청진항 사이의 해로를 개설한다.

② 남과 북은 남북 사이의 교류·협력 규모가 커지고 군사적 대결상태가 해소되는 데 따라 해로를 추가로 개설하고, 경의선 철도와 문산-개성 사이의 도로를 비롯한 육로를 연결하며 김포공항과 순안비행장 사이의 항로를 개설한다.

- ③ 남과 북은 교통로가 개설되기 이전에 진행되는 인원왕래와 물자교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쌍방이 합의하여 임시교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 ④ 남과 북은 육로, 해로, 항로의 개설과 운영의 원활한 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⑤ 남북 사이의 교류물자는 쌍방이 합의하여 개설한 육로, 해로, 항로를 통하여 직접 수송하도록 한다.
- ⑥ 남과 북은 자기측 지역에 들어온 상대측 교통수단에 불의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긴급구제조치를 취한다.
- ⑦ 남과 북은 교통로 개설 및 운영과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 ⑧ 남과 북은 남북 사이에 운행되는 교통수단과 승무원들의 출입절차, 교통수단 운행방법, 통과지점 선정 등 교통로 개설과 운영에서 제기되는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토의하여 정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연결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한다.

- ① 남과 북은 빠른 시일 안에 판문점을 통하여 우편과 전기통신을 교환, 연결하도록 하며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기술협력을 실시한다.
- ②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에서 공적 사업과 인도적

사업을 우선 보장하며, 점차 그 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운영 하도록 한다.

③ 남과 북은 우편과 전기통신교류의 비밀을 보장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이를 정치·군사적 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④ 남과 북은 우편 및 전기통신교류와 관련한 해당 국제협약들을 존중한다.

⑤ 남과 북 사이에 교류되는 우편 및 전기통신의 종류와 요금, 우편물의 수집, 전달방법 등 기타 실무적 문제들은 경제 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 남과 북은 국제경제의 여러 분야에서 서로 협력하며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한다.

①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여러 국제행사와 국제기구들에서 서로 협력한다.

② 남과 북은 경제분야에서 대외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대책을 협의·추진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지원·보장한다.

제7조 남과 북은 경제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실현하는 데 필요한 기구설치문제와 기타 실무적 문제들을 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 이 합의서 '제1장 경제교류·협력' 부분의 이행 및 이와
관련한 세부사항의 협의·실천은 남북경제교류·협력공동위원
회에서 한다.

빈 면

II. 綜合 討論

- 司會: 金桂洙(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 討論: 李成春(한국일보 논설위원)
金學俊(단국대학교 이사장)
鄭用吉(동국대학교 교수)
梁榮植(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

빈 면

綜 合 討 論

司會: 金桂洙(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討論: 李成春(한국일보 논설위원)

金學俊(단국대학교 이사장)

鄭用吉(동국대학교 교수)

梁榮植(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

김계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민족통일연구원의 두분 박사님들의 주제발표를 끝내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춘: 박영호·박순성 두분 박사님의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우선 제 나름대로 남북관계에 대한 사항을 간략히 얘기하고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한반도가 분단된 지 50년이 지났고, 5개 분단국중 유일하게 한반도만이 분단된 상태로 남아 있으며, 대립·갈등은 더욱 심각해 졌습니다. 한편, 그 동안 남북 대화는 어느 정도 시도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월남이나 예멘의 경우와는 비할 바 없지만 통계를 보면 그 동안 남북 대화는 320여 회나 시도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300여회의 대화진전 및 국제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남북관계는 이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우리는 독일의 통일에서 여러가지로 교훈을 얻을 수 있다고 생

각됩니다. 독일의 경우, 양측이 구체적인 통일방안을 내세운 적은 없었습니다. 통독 이전까지 그들은 주로 경제교류와 같은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교류가 주를 이루고, 이를 통해 상호간의 이해를 돈독히 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베를린을 관리하던 4대강국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통일의 국제환경을 유리하게 이끌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우는 거의 불가능한 정치적 시도만이 강조되어 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비근한 예로 그 동안 양측의 정치적 제의는 상대방에 의해 수용된 적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 동안 남북한간에는 너무 정치적인 측면에만 신경을 써 왔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가 소홀하게 되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재의 남북관계의 상황도 정치적 접근에만 치우쳐져 있어서 생겨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오늘 발표된 논문은 이전에 제기되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남북관계에서는 정치적 시도보다는 오늘 논문에서 발표된 것처럼 비정치적 시도 및 방법이 시도되어야 하며, 앞으로는 이러한 정책적 대안을 정부가 독단적으로 처리할 것이 아니라, 각 전문기관에 맡겨야 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준: 두 분 박사님께서 오늘 좋은 논문을 발표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며, 저도 많이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논문 내용이 현실을 잘 반영하면서 학문적으로도 잘 정리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성춘 위원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찬성을 하는

입장입니다.

우선 박영호 박사님의 논문은 남북관계 개선을 (신)기능주의 시각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즉 정치·군사적인 문제보다는 경제·사회·문화분야에서 우선 합의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남북한이 공통점을 발견하고 남북한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한다는 것으로서 지극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발상에는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는 바입니다.

다만 최근 북한의 행태로 보아 비정치·비군사적인 방법을 택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북한에 의해 어느 정도 수용되고 있느냐는 문제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대북지원의 부담도 통일비용을 미리 지불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성호 사건, 목사님의 납치, 쌀수송 선박의 억류 등과 같은 문제를 보면 북한이 우리가 선의를 베풀 수 있는 파트너인가 하는 점에 많은 의문이 생기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 논문의 요지들도 실질적인 정책이 북한에 의해 어느 정도 수용되고, 실현화될 수 있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사실 남북한은 가장 기본적인 것에서조차도 아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비근한 예로 남북한을 하나로 부르는 호칭조차도 상호간의 언어로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북한이 같은 핏줄, 같은 언어를 공유한다는 측면에서 아주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남북한관계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을 것이나, 결국 대한민국의 주도 아래 진행되리라 봅니다.

또한 과거 남북대화의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남북대화가 중단된 뒤 다시 재개되는 시간적인 간격이 과거에 비해 현저히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는 매우 고무적인 일로서 앞으로 남북대화가 일상화되리라 전망됩니다. 따라서 최근의 상황들이 어렵게 꼬여있지만, 이에 대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내를 갖고 정책적 숙고를 해서 대비해 나간다면 앞으로의 남북관계는 희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용길: 오늘 발표된 두 논문의 내용이 비교적 자세하기 때문에 크게 이의를 제기할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최근 썰문제를 보면서 「민족」이라는 것에 대해 다시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독일에서의 민족문제 논쟁은 좋은 비교가 될 것 같습니다. 통독 이전 동독에서는 소위 「1민족 2국가」를 주장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사회주의식으로만 독일이 통일되어야 한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 서독에서는 이에 대해 「2민족 2국가」를 주장하였습니다. 즉 동서독간의 체제의 이질화된 성향에 기반하여 독일 민족을 자본주의적 민족과 사회주의적 민족으로 구분했던 것입니다. 또한 통일 이후에도 독일에서는 민족문제가 또 다시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민족을 이야기할 때 단일 인종, 문화, 언어를 강조하지만, 동독의 경우 이데올로기에 상당한 초점을 맞추고 있었습니다. 북한 역시 기본적으로는 민족이라는 개념을 이데올로기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통일한국에서도 단

순히 언어·인종·문화의 단일성에만 중점을 두는 것에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민족복리 증진」이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남북한이 받아들이는 개념에는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은 결국 남북한이 같이 수행하는 개념이지만, 북한은 노동당 규약에 공산화 통일이란 것이 명시되어 있듯이 전혀 다른 목표를 지니고 있습니다. 경제교류만 하더라도 남한측은 남북한관계의 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보고 있지만, 북한의 경우에도 그러한가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이익에 유리하다”는 것도 북한입장에서는 개방으로 인해 체제가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단하게 공동체가 형성되리라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논문에서 한·중간의 군사관계 강화를 말했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이보다는 북·미간의 관계정상화가 오히려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우리가 예상하는 남북한통일은 좀 더 요원한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이 먼저 변화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작금의 상황은 대북지원의 타당성에 대한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경제분야 실천방안과 관련하여 과거 동서독관계에서는 정치적인 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정경분리정책으로 경제문제는 진행된 바 있는데, 우리도 북한을 변화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경분리의 정책을 취해서 북한의 개혁·개방을 유도해야 합니다.

박순성 박사의 글 중에서 북한의 개혁·통일지향 세력을 키워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서독의 경우 통일직전 서독이 “통일이 되어도 동독측 인사를 처벌하지 않겠다”고 제시한 것이 통일을 촉진시켰다고 봅니다. 다만 현재 우리의 정보수집 능력상 북한내 개혁·통일지향 세력의 파악이 가능한가에는 의문의 여지가 많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보는 부단히 수집해야 하고 이를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능주의의 약점은 이론과 실천상의 괴리, 즉 실행되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와 어긋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기능주의적 교류가 오히려 북한정권의 연장만을 도와줄 뿐, 통일과 무관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이와 아울러 남북관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은 남한내 정치의 안정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우처럼 국내정치의 일환으로 남북관계를 생각한다면 남북문제의 해결은 어려워질 것입니다. 더이상 남북관계를 국내정치에 이용해서는 안되겠습니다.

양영식: 한반도 상황은 협력하면서 대결하는 야누스적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자세도 야누스적이라 생각합니다. 쌀을 지원받는 아우의 입장이면서도 은혜를 정반대로 갚는 북한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통일문제의 현주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단 50년, 해방50년, 회년 50년의 이 시점에서 통일은 가시권 내에 들어와 있음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남북관계를 이스라엘민족이 가나안 복지를 찾아가는 것

처럼 큰 줄기에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번의 대북 쌀지원 문제도 우리가 북한의 동포들에게 보내는 것이지, 북한 노동당에게 보내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쌀제공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쌀제공의 과정에서 실무적인 준비작업이 미비하여 상대방에게 빌미를 준 것은 정부의 책임입니다. 그렇다고 전술적인 문제를 전략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남북관계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통일과정은 민족발전의 과정”으로 설정한 박순성박사의 견해는 민족발전공동계획을 수립한다는 차원에서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박영호박사께서 정치·경제·사회·문화·군사 등의 분야를 망라한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체계적인 수립을 지적하셨습니다만 현단계에서의 토론은 경제분야의 통일정책의 발전 차원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정부의 통일방안은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이에 추가된 민족발전공동계획 정도이며, 그 이상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번 민족통일연구원에서 그간의 축적된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실주의적으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것은 앞으로 정부에 상당한 영양분을 제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공동계획이 북한을 파트너로 하는 것이고 북한을 견인해낼 수 있는 계획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북한이 우리의 단계별 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 라는 북한의 단계별 전략이 향후 연구과제로 보완되었으면 합니다. 둘째, 통일의 시나리오를 대체

로 세가지로 상정할 수 있는데, 이들 시나리오들의 차별성을 전제로 단계별 전략이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①북한의 전쟁도발, ②급변사태, ③대화·협상에 의한 통일방안 즉 민족공동체 통일방안과 민족발전공동계획 등 세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할 수 있는데, 논문의 내용에서는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차별적 상황이 혼재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례를 들면 박영호박사님의 경우 북한의 전직 공직자에 대한 재교육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는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내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는 급변사태의 경우 대비계획에 포함되어 비밀리에 다루어져야 할 내용입니다. 최근 북경에서 서울대학교와 북한의 사회정치학회가 공동주최한 학술회의에서 북한의 조국통일연구원 박동건실장의 발언은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에 두려움을 갖고 있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월맹식 무력통일도 반대하지만 독일식 흡수통일도 반대한다. 일방이 타방을 돈으로 매수해내려 한다면 그것은 결코 이루지 못할 망상에 불과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미 북한은 「약자의 입장」에서 항변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대북정책을 모두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박순성박사님의 경우 북한의 통일지향세력을 육성함으로써 북한 내부에서 체제전환의 요구를 증대토록 하겠다는 것도 흡수통일의 구도로 해석될 소지가 큼니다. 이런 점들을 공개적인 계획에서는 분리해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소한 문제점을 제외하면 오늘 발표에서 단계별 사업

계획으로 제시한 7대 분야는 상당히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계획으로 남북관계를 이끌어 나가야지 북경 쌀회담을 곧바로 경협으로 연계하려는 비약적인 구도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하겠습니다. 반면 오늘 발표는 종합적인 대계를 제시해주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의 대북정책 및 통일정책을 입안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두분 논문은 1992년도 남북한 정부당국이 합의한 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한이 응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북한경제를 희생하고 남북의 경제력 격차를 줄인다는 전제하의 우선순위별 사업은 북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정부가 중요한 사안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경수로기획단만이 아니라 민족발전공동계획기획단을 통일원 주도하에 구성하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이처럼 모든 것을 하나의 종합적인 틀안에서 보아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순성박사님께 드리는 질문으로 첫째는 개혁·통일세력 육성의 필요성을 제기하셨는데 이런 발상의 논리적 근거 및 현실가능성에 대한 것이고 둘째는 남북연합후 반기에 체제개혁을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부분에 대한 것인데 과연 이시기 구조조정정책 및 안정화정책을 남북이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것인지 하는 문제입니다. 북한이 매우 긴장할 문제인데 말입니다. 이 점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와 가능성에 대해서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호박사님에 대해서 첫째는 남북연합기구속에 남북분쟁해결기구 구성과 남북연합과정에서 남북연합현장의 채택 및 통일헌법외에 통일조약 채택을 제기해주었습니다. 이 점은 현재 정부의 통일방안에서는 나오지 않는 부분인데 어떤 근거에서 이런 문제를 제기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남북연합 이후 단계를 대비해서 우리 정치권의 체질강화 그리고 이념과 사상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했는데 개혁정치를 하는 현시점에서 이것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부연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수: 토론자분들의 문제제기를 잘 들었습니다. 이에 대한 발표자들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간단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성: 토론자분들께서 제기한 문제들이 근본적인 것도 있고 부분적인 것도 있는데, 이를 네가지로 간추려서 답변을 하겠습니다.

먼저, 김학준교수님께서 제기하신 통일론에 대한 학문적·현실적 질문으로 (신)기능주의에 대한 문제입니다. 저는 이 질문을 다른 식으로 재구성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기능주의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혹은 민족발전공동계획의 현실성 여부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정용길교수님께서도 제기하셨고, 양영식위원님도 남북관계의 양면성이란 측면에서 제기하신 문제라고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신)기능주의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 점

에 대해서는 저의 논문 주13번과 주17번 등에서 나름대로의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이론적으로 하기 보다는, 현실적으로 오늘날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대한 저의 판단을 말씀드리면서 답변하고자 합니다. 현단계의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제정세, 동북아정세에 걸맞는 형태로 재편되고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재편은 급격한 변화와 진전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만 때로는 과거 남북관계의 낡은 인식에 기초한 남북한의 전략적 행위로 인하여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단 이후 남북간의 오랜 적대관계와 그동안의 미묘한 긴장완화와 관계발전을 고려하였을 때, 이성춘논설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즉 남북관계가 전혀 변화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현재는 통일로 나아가는 역사적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하겠습니다. 일시적인 긴장고조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는 우리의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점차 개선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점을 김학준교수님께서도 남북대화의 일상화라는 표현으로 지적해주셨습니다. 사실 질문도 하고 답변도 해주신 것이지요. 이러한 점진적인 과정을 기대할 때, 통일은 현실로 다가오리라 생각하며 이 점을 양영식위원님께서도 지적해주신 것입니다. 이 정도로 (신)기능주의적 관점 및 남북관계의 양면성에 대한 질문에 답하고자 합니다.

둘째, 정용길교수님께서 제기한 민족 내지는 민족공동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민족 내지는 민족공동체라는 것은 역사적 산물입니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 산물은 우리에게 역사적 지표로서 등장할 수도 있고 사회적·정치적 유대를 위한 상징 개념으로 등

장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민족 내지 민족공동체란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혹은 이를 인식의 도구로 사용함으로써, 우리는 자신의 정치적·경제적 행위의 기본 바탕 혹은 지향으로 민족 내지 민족공동체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런 민족 내지는 민족공동체라는 개념이 이데올로기 혹은 체제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세계사적인 흐름이나 이데올로기적인 혹은 체제 차원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양 정부가 공히 민족의 중요성과 통일의 중요성을 교육해 왔다는 점이 우리에게 큰 힘이 되리라 판단하고 싶습니다. 특히 현재 우리 정부의 민족공동체통일방안과 민족발전공동계획이란 표현 속에 민족이란 개념이 정치적 담화의 도구로서 혹은 인식 및 행위의 기본 틀로 제시되어 일상화될 때 통일에 대한 회의도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셋째, 정용길교수님과 양영식위원님이 동시에 제기하신 질문으로 과연 북한의 개혁·통일지향세력이 육성 가능한 것인가? 정보가 부재한 상황속에서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것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저는 오히려 개혁·통일지향세력을 민족발전공동계획의 중장기적인 전망속에서 파악했으며 현재의 정보의 확보 여부는 중요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점차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을 통해 투명해진다면 개혁·통일지향세력이 누가될지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서 보다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특수한 인식태도를 벗어나 보다 일반론적인 인식에 근거해야 한다는 것이며, 이에 근거하여 개혁·통일지향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북한이란 사회도 강압을 원리로 하는 국가이고 국가의 발전이란 차원에서 보았을 때, 언젠가는 소멸될 수 있는 혹은 다른 형태로 전환될 수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란 국가의 변화가능성이 내부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1980년대 후반부터 나타났던 사회주의국가들의 자본주의로의 체제이행과정에서 개혁·개방세력들이 체제이행의 큰 몫을 했다는 사실에 근거하여 장기적인 차원에서 개혁·통일지향세력을 육성하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다소 낙관적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런 것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넷째, 양영식위원님께서서는 경제분야의 통일정책으로서 민족발전 공동계획을 축소·제한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것은 경제분야의 통일정책으로부터 발전하여 점차 전반적인 통일정책으로 확대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양영식위원님이 제기하신 북한의 체제개혁을 남북 공동으로 추진한다는 점에 대한 논리적·현실적 타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 부분은 남북연합후반기에 해당하고 남북연합후반기란 것은 통일에 대한 남북한의 합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시기이기 때문에 현단계에서 볼 때는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단계론적인 접근에 있어서는 당연히 구상하지 않을 수 없는 사항이라 생각합니다.

박영호: 우선 네분 토론자들의 말씀 감사합니다. 네분이 토론해

준 사항들은 향후 보다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나가는 데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질문들 중 근본적인 질문은 대략 3가지로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 민족발전공동계획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있고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는 지금의 북한과 협상이 가능한 것인가의 문제로 환언할 수 있겠습니다. 민족발전공동계획은 평화적 통일방안으로서의 중장기적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따라서 협상의 대상은 변화하지 않는 북한이 아니라 변화하는 북한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북한체제가 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유효적절한 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언급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의 폐쇄적인 북한을 스스로 개방적인 사회로 변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둘째, 변화하는 북한을 대상으로 한다면 우리가 어떤 정책을 추진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우리의 방침이 북한을 고사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계이지먼트정책(참여화정책)이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하려고 한다면 최근 발생하고 있는 불미스런 사건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차원에서 통일문제를 보고, 이러한 기존의 정책을 전실하게 이끌어 가는 것이 남북관계의 개선 및 통일을 이룰 수 있는 최선의 정책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셋째, 민족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민족공동체란 표현 속의 '민족'이란 개념은 단순히 남북한이 공통된 역사와 문화, 언어를 가지고 있다는 데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민족은 분단

50년 동안 정치이념에서는 물론 사회·문화적 생활에 이르기까지 상당부분 이질화된 측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의 논문에서 제시한 민족이란 개념은 남북한이 이미 공유하고 있는 속성들 뿐 아니라, 분단 이후 이질화된 면들을 극복하고 동질성들을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새롭게 형성되어야 하는 민족이란 개념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다음으로 구체적인 문제제기에 대해 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양영식위원님이 제기하신 남북분쟁해결기구 설치에 대한 문제입니다. 「민족공동체통일방안」속의 남북연합단계에서는 남북정상회담, 남북각료회의, 남북평의회 등의 기구가 있습니다. 물론 이들 기구들이 남북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남북분쟁해결기구는 제3자의 입장에서 이 문제들을 집중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의도에서 제기한 것입니다.

둘째, 남북연합헌장은 화해협력단계가 우리가 목표치대로 진행되었을 때 남북연합단계로 이행하는 합의를 지칭하는 헌장이고, 통일조약은 남북연합후반기에 가서 변화된 북한과 남한이 통일의 시기, 절차 등에 관해 합의함으로써 체결하는 조약이고, 통일헌법은 그러한 조약을 구체적인 법안의 수립과정을 통해 통일이후 국체, 권력기구의 구성, 권력구조 및 배분문제, 기본권 등을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셋째, 우리 정치권의 체질강화, 이념과 사상의 다양성을 제도화하는 문제는 향후 남북관계의 개선 및 통일을 위해서는 우리가 북한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내적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차원

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남북관계에서 중시되어야 할 사항의 하나는 우리 체제 내부의 통합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치는 물론 이념 및 사상 측면에서도 모든 것을 수용하여 소화할 수 있을 만큼 체제역량이 강화되어야 통일은 현실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김계수: 플로어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질문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두분 정도만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관옥(在美 교수): 발표하신 두분은 북한과 화해·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룬다고 하는데, 북한은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통일정책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솔직하고 대담하게 “기회와 힘이 있으면 남한정부를 타도하겠다” 혹은 “전쟁을 통해서라도 통일을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이런 북한을 두고 화해와 공동번영을 하겠다고 얼토당토하지 않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이렇게 해서 화해와 공동번영을 이룰 수 있겠는가? 오히려 그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주고 무력통일의 기회를 제공해주는 꼴이 되어버리지는 않겠는지? 이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번째로 지금 한국에서는 흡수통일논의가 북한을 자극한다고 해서 발표를 꺼려하는데, 그러지 말고 “북한의 현체제와 정권은 도저히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 후에 수립되는 정권과 협상을 통해 통일을 해야겠다 즉 흡수통일

을 해야겠다” 는 식으로 한국도 솔직하게 입장을 표명해야 하리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다면 모르는 국민들을 현혹하여 통일을 지연시키는 결과를 낳게 되며 이것은 정부의 책임이라고 봅니다. 이 두가지 점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곽태환(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장): 정부의 대북정책의 문제는 일관성의 문제입니다. 즉 참여정책(포용정책)이 일관성없기 때문에 남한을 비롯한 북한의 행동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대북정책의 일관성만 유지된다면 민족발전공동체획 또한 실현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박영호박사에게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2단계에 남북분쟁해결기구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제1단계 즉 현재단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영호: 곽태환교수님의 분쟁해결기구의 설립시기에 대한 문제 제기는 참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관옥교수님의 북한의 대남적화통일정책의 불변성에 대한 지적은 어느 정도 수긍하지만, 이에 대한 대응으로 한국이 흡수통일정책을 추진한다면 남북 갈등이 오히려 심화될 것입니다. 남북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도 고려해야만 할 것입니다. 이는 19세기 말 우리의 역사가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의 대북정책은 남북관계의 현실을 바탕으로 하여 대내외적인 여러가지 사정을 반영함으로써 수립·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순성: 매우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첫째 질문은 우리의 남북정책이 좀더 솔직해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치란 것은 현실의 불투명성을 투명하게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만 불투명한 것을 좀더 지혜롭게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투명성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두번째는 남북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일상적 현실에서 보았을 때 남북관계와 북한의 통일정책이 불변인 것처럼 보이지만 분단 50년이란 시점에서, 역사적 관점에서 바라보았을 때 북한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의 발표가 질문하신 분의 입장과 다른 입장일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좀더 객관적인 또한 과거의 미묘한 변화에 대해서도 좀더 냉철한 시각을 가지고 남북관계를 바라볼 때, 통일은 현명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부족하지만 저희들의 자세에 대해서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계수: 학술대회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항상 이론과 실제의 문제입니다. 이점에 대해 많은 의문점을 제기하실 줄 압니다. 그러나 학술회의는 항상 이 모든 것을 풀지 못한 채 아쉬움을 남기고 끝나는 것이 관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것으로써 이번 학술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附錄> 會議日程

- 13:30~14:00 登 錄
- 14:00~14:05 開會辭: 李秉龍(민족통일연구원 원장)
- 14:05~15:05 主題發表
 - 司會: 金桂洙(광복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 위원장)
 - 發表: 朴英鎬(민족통일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민족공동체 형성과 「민족발전공동계획」 추진방향”
 - 朴淳成(민족통일연구원 책임연구원)
 - “「민족발전공동계획」의 경제분야 실천 방안”
- 15:05~15:20 Coffee Break
- 15:20~17:00 討論: 金學俊(단국대학교 이사장)
鄭用吉(동국대학교 교수)
李成春(한국일보 논설위원)
梁榮植(남북회담사무국 자문위원)
- 17:00~18:00 다과회

빈 면

◎ 發刊資料目錄 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の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歧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김일성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の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 95-01 韓半島 平和體制 構築方案 摸索
- 95-02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 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放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化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
分析을 中心으로
- 93-21 北韓의 에너지 供給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 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쉽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金正日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和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的 對南政策 展望
- 9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の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현황과 전망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 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비교 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의 變化와 關聯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南北韓 文化政策 比較 研究
- 94-29 南北韓 協商行態 比較研究
- 94-30 南北韓 特殊關係의 法的 性格과 運營方案
- 94-31 統一韓國의 權力構造
- 94-32 統一韓國의 社會福祉政策
- 94-33 統一韓國의 政治理念
- 94-34 統一以後 國民統合 方案 研究
- 94-35 統一韓國의 經濟體制
- 94-36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交流·協力增大 方案 研究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영향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葉전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 安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를 계기로 본
亞·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 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 95-01 鄧小平 死後 中國의 國內政勢 및 韓半島政策 展望
- 95-02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5. 1~3)
- 95-03 中國의 政局展望: 第8期 全人大 3次大會 結果를
中心으로
- 95-04 金正日 承繼體制 鞏固化 動向
- 95-05 北韓의 食糧支援 要請背景과 對北韓 食糧支援 方案
- 95-06 金日成 死後 1年: 북한정세의 동향과 전망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95-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1. 1 ~ 1995. 3. 31)
95-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5. 4. 1 ~ 1995. 6. 30)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 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 (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4(1995)

<資 料>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남북화해·협력의 실천지표:
「민족발전공동계획」

세미나시리즈 95-02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1-4304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5年 8月 日
發行日 1995年 8月 日
